



2013 November FTA 무역 리포트

01 FTA 포커스

I. FTA 원산지검증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02 FTA 최근 동향

I. 관세청 주요 이슈
II. 우리나라 FTA 동향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03 한·EFTA FTA 발효 7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I. 對EFTA 교역 동향
II. EFTA 주요 국가의 FTA 전후 교역 변화
III. 한·EFTA FTA 발효 7년과 시사점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I. 자동차의 교역동향
II. 자동차의 세부 품목별 교역동향
III. 자동차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IV. 시사점 및 활용방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인터뷰
특집: 유럽권 3개 FTA협정의 특징과 기업의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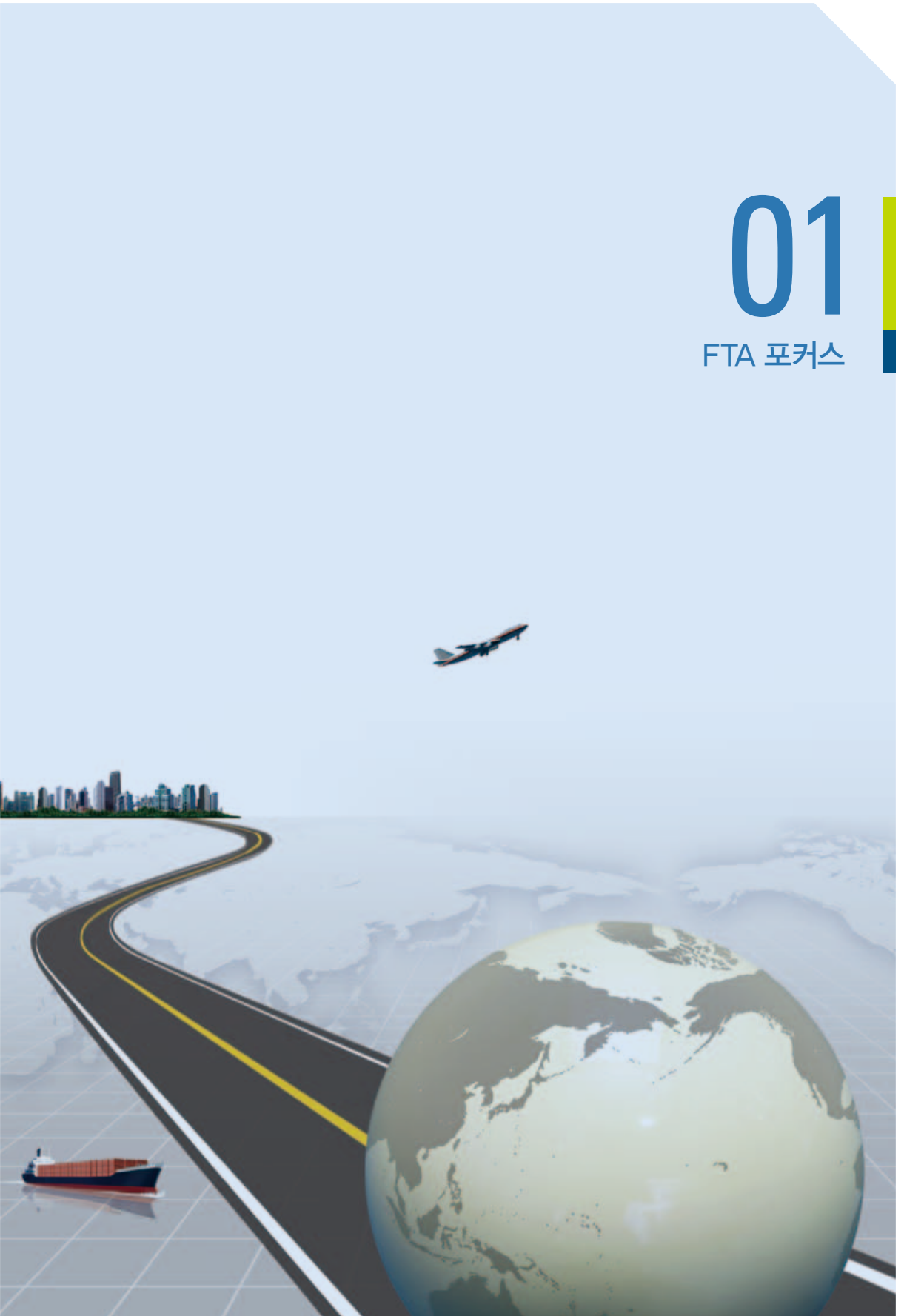
05 FTA 교역지도

부록

01. FTA 포커스	3
I. FTA 원산지검증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4
02. FTA 최근 동향	11
I. 관세청 주요 이슈	12
II. 우리나라 FTA 동향	15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18
03. 한·EFTA FTA 발효 7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23
I. 對EFTA 교역 동향	24
II. EFTA 주요 국가의 FTA 전후 교역 변화	29
III. 한·EFTA FTA 발효 7년과 시사점	38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	39
I. 자동차의 교역동향	40
II. 자동차의 세부 품목별 교역동향	45
III. 자동차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46
IV. 시사점 및 활용방안	54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인터뷰	57
특집: 유럽권 3개 FTA협정의 특징과 기업의 활용방안	60
05. FTA 교역지도	71
부록	93

01

FTA 포커스



01. FTA 포커스

1. FTA 원산지검증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이대복 관세청 前차장
(경영학박사, 現김앤장 고문)

1) 머리말¹⁾

FTA 효과는 교역의 증대로 계약국 수출자의 이익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있다. 이러한 FTA 효과는 FTA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하여서만 확보되며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이 중요한데,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행위를 차단하고 제3국 산의 우회수입의 방지를 위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및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FTA 관세특혜 적용 요건은 ① 계약당사국 사람(기업)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거래자 요건) ② 수출입물품이 관세양허 대상품목(HS CODE 6단위)이어야 하고(품목요건) ③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고(직접운송원칙) ④ 협정에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원산지 요건) 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형식+실질), 적용신청 등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고(증명/절차 요건) ⑥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5년) 보관하고 세관검증을 받아야 하는(검증요건) 등 이러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FTA 관세 특혜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2) FTA 원산지 검증

FTA에서의 원산지 검증 방식은 ①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사후검증) ②서면 검증 우선 실시 후 현지검증을 실시하며(서면검증 우선) ③ 국내 수입자 검증 후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검증(수입자 검증/Importer focus)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수출국 세관 당국이 검증 주체가 되는 간접 검증과 수입국 세관 당국이 검증 주체가 되는 직접 검증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간접 검증이나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섬유·의류에 대하여는 간접 검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직접 검증의 길도 열어 놓고 있다(한·미 FTA 협정 제6조 및 미국 19CFR 10.1027(d)).

3) FTA 원산지검증 결과 및 권리구제 방법

세관에서의 원산지 검증 결과 FTA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정되면 그 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대우가 배제되어 기존에 면제 받았던 관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가산세부와 및 관련 수수료를 물게 된다.

1)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관세청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상품에 대하여는 과거 수입통관 건들을 세관에서 추적하여 추징 조치 등을 취하게 되고 향후 동일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가 중지될 것이다. 추가 행정적 조치로서, 수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수출자의 향후 수출품은 세관 검사 및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통관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며, 우리나라 FTA 특례법에 의한 처벌(벌칙, 양벌규정, 과태료)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이익제기, 이익신청, 과세전적부심청구,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과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간의 원산지 검증 결과 및 권리구제 사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4월 한·칠레 FTA 협정 발효 이후 다량의 대상은 주로 원산지 증명서상의 기재내용, 대상품목 여부, 절차 위반, 서명 진위 여부 등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사례가 많았다. 이후 한·ASEAN FTA 발효(2007년 6월) 이후에는 형식·절차적 사항에 더하여 직접운송의 원칙, C/O의 유효기간 여부 등이 분쟁 사례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이후에는 한국세관과 미국세관의 직접 검증에 따라 세번 변경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의 실제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다량 사례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기업 정보 제공범위와 세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련 문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논란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이 있는 EU나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원산지 검증 체제의 순탄한 정착과 우리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FTA 특혜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하여, 상대국 세관당국, 특히 한국과 미국 세관당국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 및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운영 못지않게, 해당 기업을 도와주는 법무법인, 관세법인, 회계법인등의 FTA 전문가들이 세관당국과 수출입 기업간의 중간에서 얼마나 FTA 전문성을 발휘하여 win-win적인 solutions를 도출해 내느냐가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세관의 요구를 이해 못하고 무조건 관(官)을 비난, 원망하든가, 자문해주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가이드를 주어 해당기업이 줄지에 FTA 특혜 관세를 추징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4) FTA 원산지 검증 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우리는 흔히 어느 국가든지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려면 여성 노동력을 참여시켜야 하고, 4만불대에 가려면 공직사회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청렴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 싱가포르 등 현재 세계 상위 소득 국가들을 보면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사회적 효율성이 높은 나라이고 그렇게 되도록 사회구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소득과 부가 높게 되나, 그렇지 못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나라는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은 요원해진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FTA에 대한 공적(公的) 지원체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의 거시적, 개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가. 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 대행체제의 유도

2003년 한·칠레 FTA 협정 체결을 시발로 정부는 기업 및 국민들에게 FTA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이 보다 전문적, 기술적인 계도, 지도를 요구하면서 현재는 이런 지원책들이 기업들에 대한 1:1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FTA 원산지 업무의 전문가인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들이 이런 공적 프로그램에 핵심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충분한 인력과 자원으로 FTA 체제에 발 빠르게 적응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잘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원산지관리시스템 상의 핵심 자료들이 기업내부정보인 원가자료와 관련되어 있다보니 외주 용역보다는 내부자체처리 시스템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체제 도입,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FTA 원산지업무를 가르쳐 준다거나, 전문성이 있는 관세사에게 용역을 주어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해당 기업을 지도하여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효과는 보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흠뻑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는 되지 않는 것 같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력난, 잦은 이직률 등의 현실을 직시하면 복잡하고 난해한 이 FTA 업무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세무회계 분야의 기장 대리나 관세분야의 통관 대행처럼 FTA 원산지 관리 및 검증대비 업무는 FTA 전문가에 의한 대행체제를 갖추도록 법 또는 제도적 지원책 및 유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업무대행 체제가 갖춰져야 현재의 일시적 컨설팅 지원체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 운영 체제를 갖추게 되어 중소기업들에게 “한 끼 먹을 물고기가 아닌 평생 먹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제공”해 줌으로써 중소기업들에 제도적 장치와 장기적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현재의 단기간 컨설팅 지원방식에서 전환하여, 기업들에게 전문가 외주대행체제를 갖도록 유도하고, 그 대행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체제가 되면, FTA 컨설팅 시장의 왜곡현상과 비효율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혜택을 보는 한도 내에서 외부 전문 인력들에게 서비스료로 보상할 것이고, FTA 전문인력은 전문성을 더욱 제고시켜 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행할 것이다.

이는 선순환의 효과를 불러 일으켜 그동안 FTA 혜택을 누리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여건이 좋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까지 FTA 관세특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누구일까? HS 품목분류, 관세상 가격평가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관세사와 FTA 특혜원산지 제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획득한 원산지 관리사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이미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들이므로 타 인력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의 지속적 비즈니스 영역이므로 신뢰감 있고 책임감 있게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나.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의 확산

원산지 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자재관리, 공정, 등의 자료, 회계기록등과 관련이 있으며, 웬만한 중소기업부터는 회계관리 시스템과 연관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한 전문성을 지닌 복잡한 시스템이다. 수작업으로 이 원산지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이고 그러한 기업들도 전산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하여 개발한 FTA-PASS 시스템을 2010년 9월부터 중소기업에 보급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애용하고 있다. 원산지관리는 FTA의 원산지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운영해야하는데, FTA-PASS는 관세행정기관인 관세청과 원산지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입장에서 비용부담 없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본 시스템을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전화상담, 현장지원과 같은 FTA-PASS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무역협회에서도 KTNET을 통하여 개발한 FTA KOREA를 2011년 6월부터 중소기업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 확보를 위해 당분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향후 사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많은 민간업체들도 이 두 개의 시스템을 기초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원산지규정에 준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시스템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기업의 규모, 특성에 따라 개별 기업마다 활용에 적합한 시스템이 각기 다를 것이다.

이제는 관세청 또는 국제원산지정보원 같은 공적기관이 이러한 많은 원산지관리 전산 프로그램 간에는 성능·특성의 차이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 또는 인증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원산지 확인서를 비롯한 원산지 관련 서류들이 전자문서 형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원산지 관련 전자 문서 유통”시의 규격표준이 2원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모듈 등을 개발하여 보급되고 있으므로 2원화의 갭은 무리없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다. 원산지 전문 인력의 육성, 적극 활용

원산지 관리 업무 및 검증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관세사, 원산지 관리사등 전문인력을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육성하고, 이 전문인력들을 우리기업들에게는 경험이 일천한 원산지 관리, 검증 분야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관세사회 및 관세청의 FTA 전문 관세사의 대폭 육성 방안 추진이 필요하고, 원산지 관리사의 양성, 적극 활용을 위한 국제원산지 정보원의 적극적 역할 부여가 요망되고, 이에 따른 원산지 정보원의 다음과 같은 세부 대책 등의 추진을 기대한다.

원산지 관리사의 보수교육 상설화, 바쁜 직장인들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교육 장소를 전국적인 지역으로 확대하고 교육 시간도 과목당 교육이수제로 하여 전체 과목을 이수하면 시험 후 자격을 주는 방안, 주말반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5)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대책을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상대국 세관의 서류 요구사항의 철저한 관리, 유지

원산지 검증을 위한 상대국 세관의 서류 요구 사항은 기업이 제조나 수출하는 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자기 기업에 특별히 해당하는 요구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상의 주요 정보사항(DATA ELEMENT)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번변경 기준 품목과 역내부가가치 기준 품목의 경우와 같이, HS 품목에 따라 원산지 검증시 요구하는 주요 서류가 다르다.

또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5년) 및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원산지 검증은 서류 검증이므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원산지관리 전산 시스템의 운영과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문가(로펌, 관세법인 등의 컨설팅 전문 업체)의 활용은 실제 상대국 세관의 검증시 검증담당 세관원들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

나.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능력 등 사전 체크 및 대비

FTA 원산지 검증은 수입자 우선 검증(Importer Focus)이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수입자들이 시행 초기 수출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다.

수출입 계약시 수출자가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으며, 원산지 검증 대비 체제가 갖춰져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책임 소재 등 분쟁 발생시 피해보상 및 구상권 행사 방법 등 세세한 해결방안을 미리 수출입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는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소송이나 제3자 알선, 조정·중재로 가는 경우에는 과도한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에서의 가장 취약점은 1차, 2차 벤더 등 협력업체에서 제공해야 할 자료의 관리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최종완성품 업체에서 자금 지원, 기술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등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별 문제 없이 최종완성품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미국도 처음부터 이러한 완벽한 체제가 갖춰진 것이 아니고 NAFTA 시행 후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비하고 실제 검증 후 보완하여 오늘날 같은 체제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원산지 직접 검증에 대비한 사전 법적 검토와 현재 운영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예비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발효전까지 최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했던 인증의 잣대가 상대적으로 관대하였지 않나 생각되고 또 기업들은 그 당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준비했던 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도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 세관 당국이 직접검증을 수행할 경우 좀 더 엄격해진 원산지 검증 기준에 기업들이 당황해 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은 원산지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검증은 인증을 득한 자가 원산지 판정시 정확하게 FTA 원산지 규정에 따랐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사,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기업의 경우 담당 인력과 시스템이 있을지라도, 한번 잘못된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누적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FTA 원산지 검증 업무이다. 원산지 기준, 특혜 세율 등 FTA 정보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적시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시스템의 정합성 여부를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상의 원산지 판정 로직이 FTA 규정에 따른 로직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본격적 검증의 시기에 대비하여, 재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라.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FTA-PASS, FTA-KOREA, 또는 전문 IT 업체들이 개발한 원산지관리전산프로그램을 자기 기업의 규모, 특성에 맞추어 도입, 운영하기를 권한다.

선택시에는 FTA 원산지 전문 관세사나 관세법인의 자문을 받아도 되고, 가장 무난한 방법은 동종업계 비슷한 규모의 기업 중 이미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업체에 문의하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특성상, 또는 운영 인력의 불확실성등 문제가 있으면 원산지 전문 관세법인, 관세사에게 동업문의 위탁 대행체제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한다. 비용이나 효율성면에서 더욱 뛰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02

FTA 최근 동향



02. FTA 최근 동향

1. 관세청 주요 이슈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허가취소 위기 구출 (2013. 08. 26)

관세청(청장 백운찬)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보세지역 규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현지 한국기업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26일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제도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을 이끌어 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보세지역 내 한국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내수판매를 25%로 제한하는 내수 판매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자국 규정으로 인해, 25%를 초과하여 생산물품을 내수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14년 1월부터 보세지역 허가취소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현지 관세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또한, 협조서한을 발송하는 등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제도 개정을 이끌어냈다.

FTA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 개최 (2013. 09. 03)

관세청(청장 백운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미국, EU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원산지검증 사례 설명회를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관리 및 검증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출기업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검증시 실제로 활용하는 질문 내용, 답변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임에도 인증수출자 오류, 원산지신고서 발급방법 미준수,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원산지검증 설명회는 서울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고, 인천에서도 10월 22일 설명회가 열렸다. 이외에 광주에서 11월 5일 개최, 대구(11월 8일), 부산(11월 13일), 울산(11월 19일) 설명회가 있었다. 또한 천안(11월 25일) 등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²⁾

우수 고졸인력 대상 취업박람회 “FTA관” 마련 (2013. 09. 26)

관세청에서는 9월 26일 코엑스에서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에 “FTA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졸 구직자들이 FTA 실무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였다. 특히 취업박람회에서는 FTA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특성화 고교생을 비롯하여 우수 고졸인력이 참가하였다.

FTA관에는 FTA 무역과 관련하여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20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고졸 구직자에 대한 채용면접을 진행하였다.

2) 설명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에서는 FTA 전문인력의 역할과 전망 등에 관한 소개와 1:1 맞춤형 진로상담 등의 FTA 전문인력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편,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체계화된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FTA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간소화·자동 발급제 시행 위해 FTA 관세특혜 고시개정 (2013. 10. 08)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기업이 FTA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자동 발급제 시행, 협정관세적용신청 간소화, 필요서식 제정 등이다.

우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와 관련하여 향후 최근 1년 이내 동종동질물품을 동일한 국가로 수출하거나 동일재료·동일공정 물품의 경우에는 필수서류외 추가 입증서류제출은 면제될 것이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심사없이 신속하게 자동발급하여 기업의 편의를 제고할 것이다. 특히,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금번 FTA 관세특혜 고시개정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기존보다 간편해져 우리상품의 FTA 특혜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애로 해결사례」 제작 (2013. 10. 10)

관세청에서는 FTA 해외 통관애로의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주안점을 두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FTA 활용애로 해결사례」를 만화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FTA의 여왕」이라는 부제로 FTA 통관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아세안 FTA 활용애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e-C/O)의 불인정과 협정 국가간 상이한 품목분류에 따른 특혜 배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과 FTA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팁도 함께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수출입기업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관세청 FTA포털시스템에 E-Book으로도 등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민원실 등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도 비치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TA 수출업무와 세관업무 고객지원센터 통해 해결 (2013. 10. 13)

관세청에서는 고객지원센터(1577-8577)를 통해 올해 1월~9월까지 관세 업무를 총 114,619건, 일평균 615건을 상담해 주었다고 밝혔다. 주요 문의 사항은 품목분류(23%), FTA 관련사항(18%),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16%), 수출입통관(17%)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협정별 상담실적은 한·EU FTA 협정이 38%, 한·미 FTA 협정이 29%, 한·아세안 FTA 협정이 19%를 차지하였다. 주요 상담 내용은 한·EU FTA는 운송 방법,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 한·아세안 FTA는 적용 관세율 문의 등 협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품목별 상담실적은 한·EU FTA의 경우는 의류, 화장품, 식품류에 대해, 한·미 FTA는 정밀기기, 오렌지, 건포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외에 2013년 5월 체결된 한·터키 FTA는 과실, 견과류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 신설 (2013. 10. 24)

관세청(백운찬 청장)에서는 FTA 활용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지원 센터에서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특히, 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는 원산지 사전검증과 사후검증 상담을 포괄하는 원산지검증 Total 지원체제이다. 또한, 관세청 본청의 사전검증 지원부서를 필두로 각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 6개 사전검증 지원팀(14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 확인자료 제출이 가능한 FTA 활용(예정)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대상 선정 이전에 원산지 사전검증을 지원해준다. 수출업체에서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서를 해당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³⁾

2013년 국제원산지컨퍼런스 개최 (2013. 11. 05 ~ 06)

관세청에서는 각국의 생생한 FTA 이행경험을 공유하고 상이한 FTA 통관절차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11월 5일(그랜드 힐튼 서울호텔)과 6일(서울세관) 양일간 2013년 국제원산지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관세기구, 주요 교역상대 관세당국, 정부부처 등 700여명의 원산지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석하였다.

3) 관세청에서는 연말까지 원산지 사전검증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14년부터 정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1일차에는 원산지제도 국제동향 및 FTA 활용 성공사례, 원산지 검증제도와 발전방안, 2일차에는 국가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와 원산지 증명제도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2013년 국제원산지컨퍼런스에서는 외국 관세청장과 현지진출기업 CEO 간담회, 관세청장 회의 등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II. 우리나라 FTA 동향

한·터키 제4차 협상 개최 (2013. 08. 21 ~ 08. 22)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제4차 협상이 지난 8월 21일에서 22일 이틀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서비스투자과장(김명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터키측은 경제부 EU국장(아피치)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협정 문안의 기본 구조에 합의하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차기 회의부터 서비스 시장과 투자 분야 개방을 위한 양허안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차 협상은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터키 FTA는 터키로서는 최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서, 서비스·투자협정 체결시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민간산업 보호기틀 마련 (2013. 09. 03 ~ 09. 05)

한국과 중국은 9월 3일에서 5일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서비스 및 투자·규범·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우선, 양국은 상품분야에서 상품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⁴⁾으로 분류하고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한해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이 두 품목군에서는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관세철폐 하는 것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이번 1단계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정하였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키로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앞으로 양측은 이번에 결정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전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의 협정문 및 시장 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4) 초민감품목은 양허 제외품목으로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한·베트남 FTA 2014년까지 체결 위해 노력 (2013. 09. 13)

우리나라는 대통령 베트남 순방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은 정상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교역 700억불이라는 교역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4년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9년 설정하였던 2015년 200억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무역 목표로 '2020년까지 7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자유화 수준이 낮아 일·베트남 FTA(2009년 10월 발효)를 체결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한·베트남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 타결될 경우, 우리 수출주력품목의 베트남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신무역규범인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노동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논의를 위한 이행위원회 개최 (2013. 09. 15)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상품협정 추가자유화 논의를 위하여 한·아세안 FTA 특별 이행위원회 회의가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상품협정상 추가자유화 논의 관련 규정(제15.2조)과 양측이 합의한 추가자유화 작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양허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 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였고, 아세안 대표단은 아세안 사무국과 10개 아세안 회원국가에서 약 40여명이 참여하였다.

한·미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2013. 10. 07)

한·미 FTA 제2차 공동위원회가 지난 10월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우리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측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 무역대표(USTR)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편, 제1차 공동위원회는 지난 2012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미 FTA가 대체로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제1차 공동위원회 이후 개최된 한·미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세관협력방안, 한·중 FTA, TPP(환태평양파트너십) 등 양측이 최근 제3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정 논의 동향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인도네시아 CEPA 연내 타결 추진 (2013. 10. 14)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에 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정상이 합의하여 협상 진전에 정치적 추동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상생형 FTA로 추진중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한·ASEAN FTA 상품협정(2007년 6월 발효)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이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ASEAN FTA(2007년 6월 발효) 및 일·인도네시아 EPA(2008년 7월 발효) 체결로 우리 주요 관심품목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서 일본 대비 경쟁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방한시 우리 대통령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간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다.

한·EU FTA 제3차 무역위원회 개최 (2013. 10. 15)

제3차 한·EU 무역위원회가 10월 15일 개최되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대표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U측에서는 Karel De Gucht(카렐 드 휴흐트)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한·EU FTA 이행 2주년을 맞아 양측간 무역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더불어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 활동,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인한 협정개정 작업 및 개성공단 제품의 한·EU 특혜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한국·EU FTA가 어려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체로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FTA가 실제로 투자 및 교역에 확대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관련 제반사항들을 더욱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및 해외 대외유통망 컨퍼런스 개최 (2013. 10. 17)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공동 주최로 『한·미 FTA 및 해외 대형유통망 컨퍼런스』가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참석 대상자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500여개업체와 미국과 중국 등 11개국 바이어 50여명이다.

이번 행사는 한·미 FTA 발효 1년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세계 대형소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열렸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미 FTA 컨퍼런스, 대형유통망 진출전략 컨퍼런스, 주요국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특히, 『한·미 FTA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1년반 동안 한·미 FTA 주요성과를 점검하였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 활용사례, 활용지원정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중미·멕시코 FTA 발효 (2013. 09. 01)

2001년 멕시코와 중미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멕시코와 다자간 FTA를 체결했으며, 코스타리카는 1995년, 니카라과는 1998년 각각 양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9월 1일 발효된 중미·멕시코 간 FTA로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협정으로 중미와 멕시코 간 통행이 더 자유워질 것이며, 이는 물류, 유통시스템에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보다 저렴한 임금으로 중미는 미대륙의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 미국 진출을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처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 미국과 FTA 협상개시 (2013. 09. 18)

지난 5월 터키 총리(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미국 방문 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터키 기업의 애로사항이 이슈로 떠올라 양국 간 경제협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9월 18일 터키 경제부장관(자페르 차오라안), 미국 상무부장관(페니 프리츠커)과 미국 무역대표부(마이클 프로만)는 FTA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체결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위원회 구성, 공동연구 등 협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동의하였다. 터키의 對미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8억 달러), 철강(6억 달러), 기계류(5억 달러)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터키의 주요 수입국으로 2012년 미국에서의 수입액은 140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터키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분야가 27억 달러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항공기(17억 달러), 광물성 연료(15억 달러), 기계류(10억 달러) 순이다. 한편, 미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범대서양 무역투자자 동반협정(TTIP)에 따른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무역수지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TPP 회의 개최, 올해 내 큰 틀 합의 원칙 확인 (2013. 09. 24)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수석대표 회의가 21일 폐막하였다. 총 21개 분야 중 반 이상의 협상 타결이 10월 TPP 정상회의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 협상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는 역시 관세 협상이다. 일본의 경우 8월 브루나이 TPP 협상회의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시작된 직후 관세철폐 대상 품목 리스트를 교환한 국가가 총 6개국에 불과하다.

이달 20일부터 미국이나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을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일본 내 조정을 끝낸 관세철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협의는 10월 APEC 회의 이후로 연기되었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APEC 회의에서 목표하는 '큰 틀 합의'는 각국 정상 성명의 형태로 "특정분야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이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협상 지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타개책을 발표해 올해 안으로 타결의지를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EU가입 추진중인 몰도바 와인 수입금지 (2013. 09. 27)

2013년 9월 10일, 러시아 소비자 권리 보호청은 몰도바산 와인에 대한 수입금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몰도바산 와인과 브랜디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조치로 몰도바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치는 EU 가입을 추진 중인 몰도바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지난 9월 3일 러시아 부총리 로고진은 몰도바가 EU 가입을 추진할 경우 가스 공급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한 동유럽 약소국인 몰도바는 최근 EU 가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몰도바 정부의 입장에 러시아 정부는 몰도바산 와인 수입금지 외에 몰도바 내 친러시아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은 정치적, 경제적 인 이유로 EU 경제권으로 편입을 추진하였다. 향후 1~2년 이내에 유라시아연합의 구축과 EU 경제권의 세력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스리랑카 FTA 11월 중 체결예정 (2013. 09. 30)

스리랑카 투자청은 중국·스리랑카 간 FTA 체결이 오는 11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투자청이 FTA 품목 리스트를 작성 중이며 스리랑카에서 11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영연방정상회담 전까지 체결 준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스리랑카 FTA 체결은 비교적 협소한 스리랑카의 對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013년 기준 스리랑카의 對중국 수입이 13억 7,6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수출은 5,200만 달러선에 불과하다.

201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약 20% 상승한 5억 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서비스업 및 농업 순이다. 특히, 스리랑카 내에서의 중국산 수입품이 전체 수입시장의 16%를 차지하는 가운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로 스리랑카 국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미 철강업체, 전기강판 덤핑 혐의로 6개 국가 제소 (2013. 09. 30)

미국 철강업체 AK사(AK Steel Corporation)는 “무방향성 전기강판⁵⁾”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로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대만, 한국, 일본, 독일, 중국, 스웨덴)를 미국 상무부에 9월 30일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청(ITA)과 ITC는 6개 국가의 NOES에 대한 미국 국내 업체의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시행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미국 국내 철강업체의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이 있으면 ITC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AK사가 제소한 국가는 6개국이나 이 소송의 타깃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철강협회는 8월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이 전달보다 13.9% 증가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며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8월 철강제품 수입은 7월 대비 16.8%, 23%로 각각 증가해 수입이 감소한 중국(-38%), 대만(-18.2%)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제품을 표적으로 한 미국 철강업체의 우리제품에 대한 제소 및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5) 전기강판은 한 방향으로 뛰어난 자기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철의 결정을 압연 방향으로 가지런히 한 방향성 전기강판(GOES)과 모든 방향으로 양호한 자기특성을 갖기 위해 불규칙적인 결정 방향을 갖도록 한 무방향성 전기강판 두 종류로 나뉜다.

캐나다·EU FTA 협상완료 가시화 단계 (2013. 10. 05)

2008년 7월부터 캐나다·EU 양국은 FTA 협상 추진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유럽 기업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양측 대표는 2012년 말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과 같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양측의 정상인 캐나다 총리실과 EU 집행위원장에서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하였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 접어들며 양측의 협상은 사실상 완료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가장 큰 쟁점인 쇠고기, 의약품에 대한 지재권과 낙농제품에 대한 협상이 남은 상태이다.

한편, 양측 정상이 직접 협상을 주도한 이후 의견 차이가 있었던, 의약품 지재권, 정부조달 등은 상호협상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양측의 합의 내용은 아직 비공개 상태라고 한다.

EU, 중국과 최초 투자보호협정 체결 추진 예정 (2013. 10. 10)

EU는 10월 18일 중국과 투자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협상에 앞서 중국이 EU 기업의 적절한 시장진입과 관련해 협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EU 의회는 지난 10월 9일 결의를 통해 중국 관공서의 결정에서 명백한 자의성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EU 의회에서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몰수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번 EU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의 추진 배경은 중국과의 교역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투자보호협정은 현재 쌍방간 다수의 긴장이 감도는 교역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투자보호협정을 통해 EU는 EU 기업의 적절한 중국 시장진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3

한·EFTA FTA 발효 7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03. 한·EFTA FTA 발효 7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송경은(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 분석 배경 : 2006년 발효된 EFTA는 우리나라가 추진한 최초의 선진경제체제와의 FTA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발효 7년차에 이르는 한·EFTA FTA의 교역 동향은 선진경제권인 한·EU와 한·미 FTA 이행 방향의 주요 나침반이 된다. 이에 한·EFTA FTA 발효 전후 對EFTA 수출입 품목 구성의 변화 분석을 통해 FTA 7년차를 점검한다. 더불어 EFTA 개별 주요국가에서 협정 발효 전후 교역 변화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FTA 활용에 유용한 산업 정보를 제공한다.
- 분석 범위 : 한·EFTA FTA 발효 전후 교역 및 산업변화, EFTA 개별 국가의 FTA 전후 교역의 특징

I. 對EFTA 교역 동향

1) 對EFTA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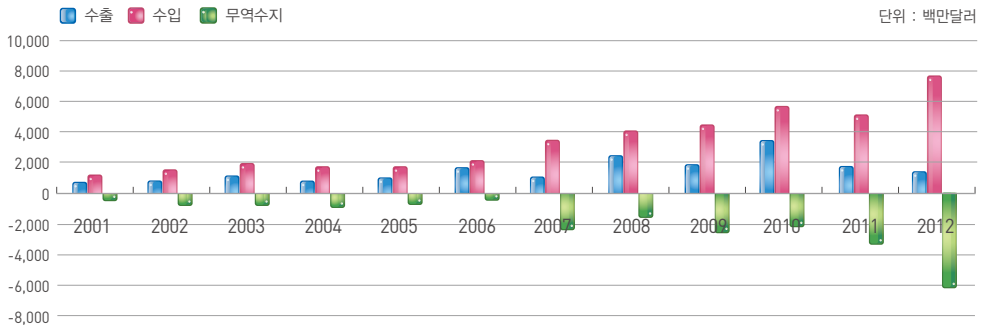
對EFTA 수입 증가, 수출 정체

2012년 말 기준 EFTA⁶⁾는 전체 수출의 0.27%, 수입의 1.5%를 점유하는 비교적 교역량은 적은 국가군이다. 우리나라의 對EFTA 수출은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8%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수입은 77.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였다. 2012년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과 EU의 이란지역 석유 금수조치⁷⁾에 따라 이란산 원유, 나프타 등의 수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해당 물품의 수입이 다른 국가로의 대체전환이 되면서 발생한 결과였다.

EFTA 회원국 가운데에는 산유국인 노르웨이가 그 대상이었다.

對EFTA 수출 구조를 MTI 1단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박, 자동차 등이 포함된 기계류에 약 86%⁸⁾로 매우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며 이는 FTA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수입 역시 기계류가 가장 주된 대상이나 절반 이하의 점유율로 수출보다는 그 집중도가 낮은 수준이다. 이외 광산물, 전자전기 제품, 화학공업제품도 10%이상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한편 對EFTA 교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유일하게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 그림 3-1 | 對EFTA 수출입 현황(2001-2012)



6)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 서유럽 국가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

7)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국가정책 차원에서 대상국마다 경제제재 조치의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8) 최근 3년(2010-2012)평균치 기준

2) 품목군별 수출 동향

對EFTA 수출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집중

우리나라의 對EFTA 주요 수출 품목군은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에 집중된 특징을 지닌다(MTI 1단위 기준). 'FTA 발효전' 기계류가 65.8%, 전자전기제품이 14.8%로 전체 수출의 80.6%를 점유하였으며, 'FTA 발효 후'에는 기계류는 81.7%로 그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전자전기제품은 7.6%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⁹⁾

(1) 증가품목군 : 기계류 > 화학공업제품 > 잡제품 > 철강금속제품

기계류의 對EFTA 수출은 'FTA 발효전'에 비해 'FTA 발효후'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다.¹⁰⁾ 우리나라가 EFTA로 수출하는 기계류 주요 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으로 약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 수출이 86%를 점유한다.

| 표 3-1 | FTA 발효 전후 對EFTA 수출 증감률 (MTI 1단위)

단위 : 백만달러, %

MTI 1단위	발효전 3년 평균 (2003 - 2005)		발효후 6년 평균 (2007 -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3,569	0.3	7,281	0.4
광산물	71942	6.9	32,750	1.6
화학공업제품	21,102	2.0	49,908	2.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0,751	3.9	40,475	2.0
섬유류	25,665	2.4	18,579	0.9
생활용품	13,271	1.3	12,789	0.6
철강금속제품	14,579	1.4	31,427	1.5
기계류	689,648	65.8	1,693,837	81.7
전자전기제품	155,144	14.8	157,905	7.6
잡제품	12,204	1.2	27,555	1.3
합계	1,047,876	100.0	2,072,506	100.0

9) 한·EFTA FTA는 2006년 9월에 발효하여 2006년 수치는 FTA 전후 평균 계산시 제외하였다.

10) 품목군별 수출입동향에서 'FTA 발효전'은 '발효전 3개년 평균치'를 'FTA 발효후'는 'FTA 발효후 6개년 평균치'를 의미한다. 이하 내용에서도 동일하다.

노르웨이로의 선박류 수출은 수주 실적에 따라 해마다 등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은 유조선 등 대형선박을 수출하고 노르웨이는 석유시추선 등 특수선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외 스위스, 아이슬란드 역시 선박의 수주 실적에 따라 수출 실적이 좌우되고 있는 등 각국의 선박 수요와 수주 계약이 주요한 무역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은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로의 편의치적¹¹⁾이 일반화된 상태로 교역 실적 자체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FTA 체결 이후 對EFTA 수출 증가가 두 번째로 높은 품목군은 화학공업제품이다. FTA 발효전보다 1.4배가 증가하였다. 화학공업제품의 주요 수출품목은 정밀화학 원료(22.6%), 농약 및 의약품(17.5%), 합성수지(14.7%), 염료 및 안료(14.5%), 기타석유화학제품(10.7%) 등이다. 이 가운데 합성수지와 기타석유화학제품의 對스위스 수출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잡제품은 對EFTA 수출가운데 약 1.3%점유에 불과한 품목군이다. 수출금액은 'FTA 발효전' 12.2백만달러에서 'FTA 발효후' 27.6백만달러로 FTA 이후 약 2.3배 증가하였다.

잡제품의 對EFTA 수출은 70%이상이 '그림'과 '조각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림의 경우 2007년 30.4백만달러에서 2012년 4.0백만달러로 조각품은 6.5백만달러에서 0.9백만달러로 FTA 이후 동 품목의 최근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예술품은 경기가 수요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어, 수출감소 추세는 EU발 경기악화로 현지 한국산 그림의 수입수요의 감소 경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잡제품 가운데 수출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귀금속장식품으로 FTA 이후 기존의 관세가 무세화면서 관세 절감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결과가 시현되었다.

철강금속제품의 對EFTA 수출은 'FTA 발효전'에 비해 'FTA 발효후' 약 2.2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나타난다. FTA 발효 1년차인 2007년 철강제품의 수출은 약 33백만달러로 발효 직전년인 2005년 17.5백만달러의 약 2배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 철강금속제품의 수출은 감소하여 2012년에는 13.1백만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철강금속제품은 원자재가격 상승, 주택 건설, 설비 투자, 수송 등 기계 장비 제조업, 세계 경기둔화에 영향이 큰 제품으로 최근의 엔저 정책까지 겹쳐 가격경쟁력까지 약화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11) FOC(flag of convenience)라고 하며 선박에 붙는 세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3국가에 선적을 등록하는 제도(두산백과사전)

(2) 감소품목군 : 광산물 > 섬유류 > 생활용품

광산물은 한·EFTA FTA 발효전에는 약 6.9%의 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이었으나 FTA 발효후 1.6%로 수출액과 비중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對EFTA 수출 광산물은 금은 및 백금이 99%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FTA 발효후 금은 및 백금의 수출 급감은 협정발효 직전 달러화 하락에 따라 금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스위스 상업은행으로부터 고순도의 골드바 생산이 가능한 국내업체에 발주한 실적이 반영된 것이었다. FTA 직전에 일시적인 수출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FTA 이후 동 품목에 대해 수출이 감소한 일종의 일시적인 착시효과라 하겠다. 골드바는 FTA 이전에도 이미 무관세 품목이다.

섬유류의 對EFTA 수출은 FTA 발효전 2.4%에서 FTA 발효후 0.9%로 점유율이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FTA 발효후' 기준 의류(40.6%), 기타섬유제품(26.6%)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편직물, 인조장섬유직물, 면직물은 수입이 일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수출액이 연평균 5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에 불과하여 영향이 미미하다.

3) 품목군별 수입 동향

우리나라의 對EFTA 수입 품목은 수출보다는 비교적 산업편중이 낮은 편이다. FTA 발효후 6개년 평균 기계류가 45.1%, 광산물이 15.6%, 전자전기제품 14.5%, 화학공업제품 14.8%로 나타났다. 동 품목군들이 전체 對EFTA 수입의 86.5%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산물(석유류)은 'FTA 발효전' 12.1%에서 'FTA 발효후' 15.6%로 품목의 점유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한·EU FTA 발효 2년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한·EFTA FTA 발효 이후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말 FTA 발효 직전년도인 2005년 대비 약 4.2배 증가하였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FTA 이후 수입이 증가하였다. 다만 비중이 감소한 품목은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 등으로 절대적인 수출액은 증가하였다.

(1) 증가품목군 : 광산물 > 철강금속제품 > 기계류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광산물은 對EFTA 수입이 급증한 품목이다. 전통적으로 EFTA로부터 수입되는 광산물은 스위스로부터의 금은 및 백금제품이었으나, 2010년 천연가스, 2011년 원유 수입이 시작되면서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 등 에너지재는 노르웨이로부터, 금제품은 스위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 표 3-2 | FTA 발효 전후 對EFTA 수입액 및 비중(MTI 1단위)

단위 : 천달러, %

MTI 1단위	발효전 3년 평균 (2003 - 2005)		발효후 6년 평균 (2007 -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57,376	3.1	144,350	2.8
광산물	224,976	12.1	799,043	15.6
화학공업제품	275,890	14.8	585,176	11.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2,423	0.7	35,601	0.7
섬유류	21,702	1.2	28,509	0.6
생활용품	15,187	0.8	21,968	0.4
철강금속제품	127,397	6.8	409,941	8.0
기계류	808,833	43.3	2,318,506	45.1
전자전기제품	303,433	16.3	743,441	14.5
잡제품	19,705	1.1	51,477	1.0
합계	1,866,923	100.0	5,138,019	100.0

특히 對스위스 금 수입은 FTA 직후인 2007년 521.6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1196.1% 급증하였다. 당시 국제 금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시기로, 국내 금 수입도 증가추세에 있었다. 게다가 한·EFTA FTA 발효로 기존에 3% 부과하던 관세가 FTA로 무관세화되면서 스위스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수입 증가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2년에는 노르웨이로부터 원유수입이 전년 대비 826.5%로 급증하였다. 이는 EU와 마찬가지로 이란지역 석유 금수조치 등에 의해 초래된 결과이다.

철강금속제품은 對EFTA 수입의 약 8.0%를 점유하는 품목군으로도 129.9백만달러('05년) → 206.8백만달러('07년) → 695.7백만달러('10년) → 364.0('12년)로 수입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 철강제품 중 세부 증가품목은 주단조품, 레일 및 철 구조물, 니켈제품, 알루미늄 등으로 원자재이다. 특히 주단조품(기타주철)의 對노르웨이 수입은 FTA 발효 1년차에 전년 동기대비 305.6%증가하였다. 한편 노르웨이는 한·EFTA FTA 발효 이후 독일산 주철을 수입 대체하는 등 4위 수입국을 상향제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는 가격경쟁력 상승요인이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다시 독일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동 품목은 기본세율 8%로 우리나라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에서 관세율 0%를 적용받고 있다.

기계류는 對EFTA 수입의 약 45.1%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품목군이다. FTA 발효이후 꾸준하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정밀 기계류는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전문성을 보이는 품목이다. 주요 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 기타 기계류,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시계 등이다. 특히 시계수입은 FTA 발효전인 2005년 70.0백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383.3백만달러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스위스산 시계는 소비재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호되는 품목이다. FTA 이후에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내에서 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감소품목군 : 상대적 비중 감소, 전자전기제품·농림수산물

한·EFTA FTA 이후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수입이 증가하였다. 전자전기제품,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등은 총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감소한 품목이다. 해당 품목군의 수입증가가 전체 평균적인 수입 확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물은 어류, 기호식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어류의 경우 발효 1년차에 7.0백만달러('07년)에서 104.7백만달러로 무려 14.9배가 증가하였다.

대부분이 노르웨이산 훈제연어, 고등어 TRQ 물량으로 협정 직후 해당 품목의 품질, 맛, 영양가치, 가격경쟁력 확보 등에 의한 선호가 증대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 여파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향후 사고로부터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EFTA 주요 국가의 FTA 전후 교역 변화

EFTA 회원국은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다. 2012년 기준 무역액은 노르웨이 52위, 스위스는 68위로서 전체 무역이 큰 규모는 아니다. 다음에서는 EFTA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FTA 전후 산업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FTA의 세부적인 이행상의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수출 부문

① 스위스

의약품 중심의 화학공업제품 수출 증가

스위스로의 수출은 한·EFTA FTA 발효전 57.6백만 달러에서('05년)에서 2012년 40.2백만달러로 FTA에도 불구하고 약 17.4백만달러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1,130백만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는 선박류의 일시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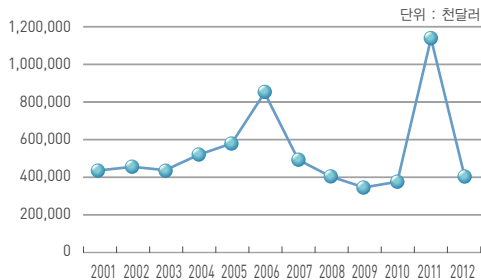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발효 전 3개년과 발효 후 6개년 평균치 비교시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잡제품 등에서 수출증가가 있었다. 이 가운데 화학공업제품은 'FTA 발효전'보다 'FTA 발효후' 2.4배 확대되었다. 對스위스 화학공업제품 수출은 FTA 발효 직전년인 2005년 15.9백만달러에서 2012년 42.2억 달러로 약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對스위스 수출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기타석유화학제품, 염료 및 안료,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등이다(MTI 3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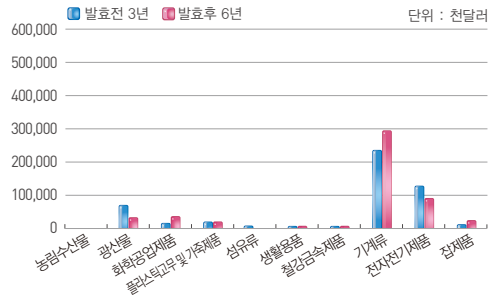
특히 의약품은 최근 3년간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스위스에서의 의약품 시장은 처방약비중이 높으며 특히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항암치료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이 주요 품목이다.¹²⁾

최근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중심으로 복제약품인 제네릭으로 대체되면서 스위스 내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이 보다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제약산업은 특허 만료, 정부의 의약품가격인하 정책 등으로 성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장 변화는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좋은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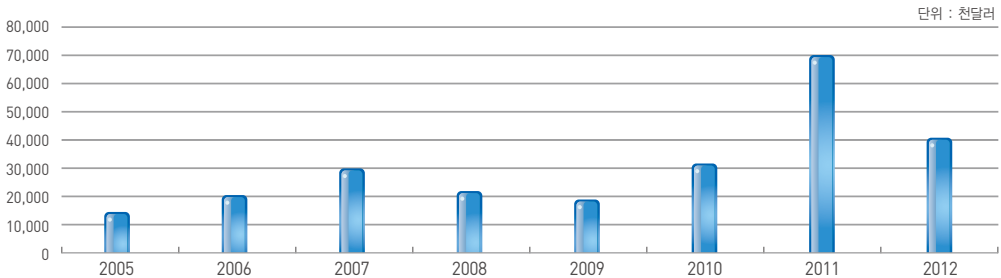
| 그림 3-2 | 對스위스 수출(2001-2012)



| 그림 3-3 | 스위스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4 | 화학공업제품 FTA 발효전후 對스위스 수출변화(2005-2012)



12) 김한나, 2012년 스위스 의약품시장을 진단하다, 코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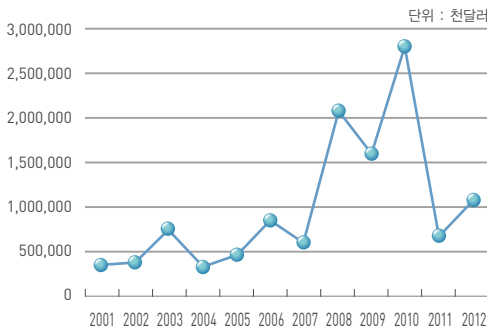
② 노르웨이

기계류 수출증대, 선박류 제외 수출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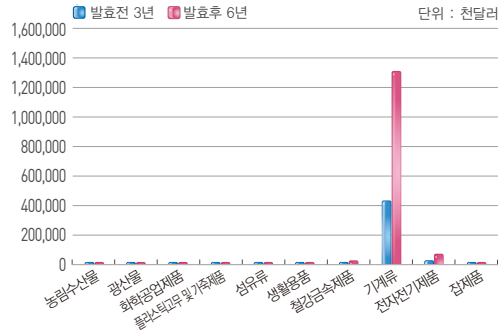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對노르웨이 수출은 한·EFTA FTA 전후로 크게 확대되었다. 발효전 468백만달러에서('05년)에서 1,061백만달러('12년)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FTA 발효전'과 'FTA 발효후'를 비교해 보면, 산업별로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잡제품 등에서의 수출 증가가 있었다. 특히 기계류는 'FTA 발효전'보다 'FTA 발효후' 3.1배 확대되었다. 對노르웨이 기계류 수출은 2005년 373백만달러, 2010년 2,646백만달러로 7.1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박류가 포함된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자동차, 공구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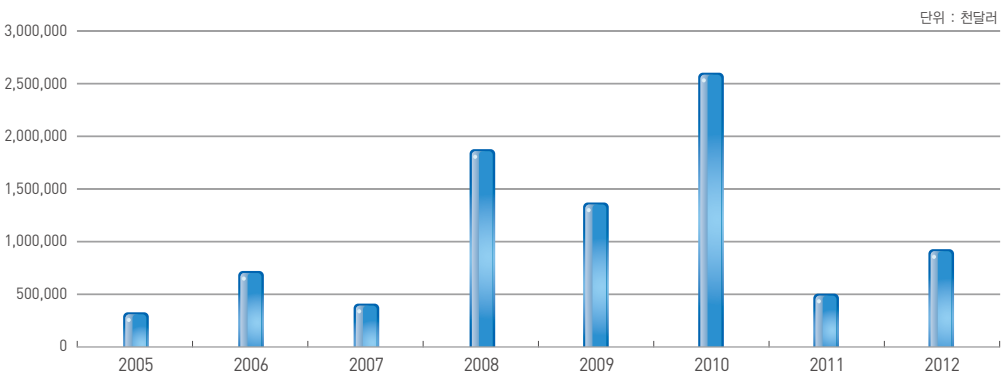
| 그림 3-5 | 對노르웨이 수출(2001-2012)



| 그림 3-6 | 對노르웨이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7 | 기계류 FTA 발효전후 對노르웨이 수출변화(2005-2012)



③ 아이슬란드

오징어 수출 증가

아이슬란드 수출은 FTA 전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FTA 직전해인 2005년 42.4백만달러였던 수출 실적이 FTA 이후인 2007년 오히려 38.4억달러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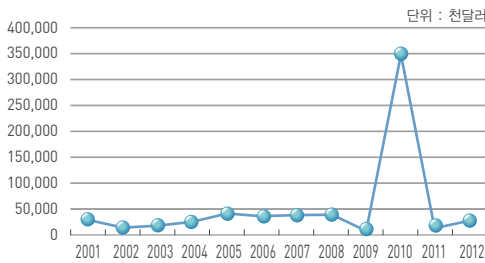
2010년 347.9억달러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선박 수주의 결과로 일시적·불규칙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이슬란드 수출 품목은 기계류가 제1위로 FTA 이후 그 집중도는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 수출이 증가한 품목군은 농림수산물이다.

아이슬란드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품목은 기호식품, 연체동물, 해조류 등이다. 이 가운데 연체동물(오징어)의 수출은 최근 아이슬란드 농림수산물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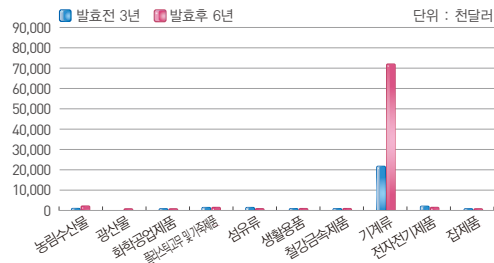
2012년 우리나라의 오징어의 총수출은 115.8백만달러로 이 가운데 3.6%인 4.1백만달러가 아이슬란드로 수출되었다. 우리나라의 오징어 수출은 중국(35.6%), 뉴질랜드(16.2%), 미국(15.8%)로 3개국이 67.5%를 점유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로의 수출액은 7위로 점유율은 낮은 수준이나, EU 내 주요 수산생산지이자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연간 91.1kg으로¹³⁾ 세계 최고수준인 아이슬란드로의 우리 수산물 수출은 향후 세계 시장 확대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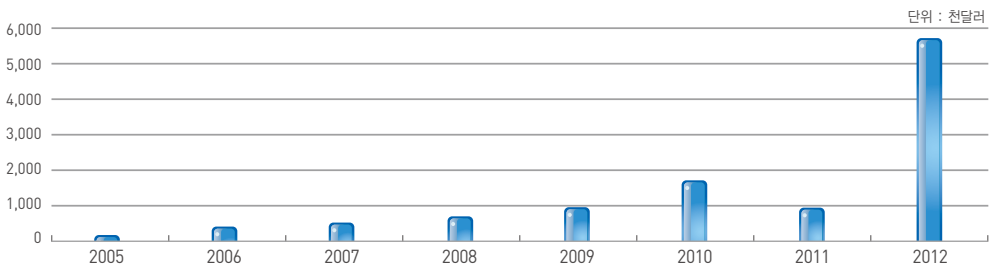
| 그림 3-8 | 아이슬란드 수출(2001-2012)



| 그림 3-9 | 아이슬란드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10 | 농림수산물 FTA 발효전후 아이슬란드 수출변화(2005-2012)



13) FAO(2009)에서 조사한 2003~2005년 평균치이며, 우리나라는 53.4kg이다.

④ 리히텐슈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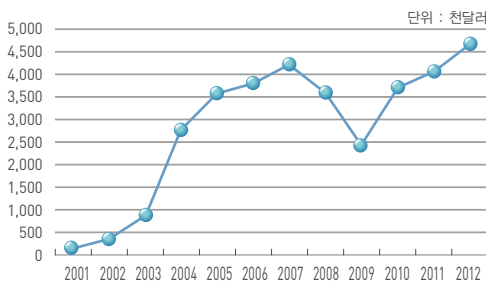
정밀화학원료 수출 증가

리히텐슈타인 수출은 한·EFTA FTA 전후로 일부 확대되었으나,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FTA 발효 전 3,6백만달러에서('05년)에서 2012년 4.7백만달러로 약 30% 가량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에 80%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물, 광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등에서의 교역은 미미한 편이다. FTA 이후 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계류 수출은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FTA 전후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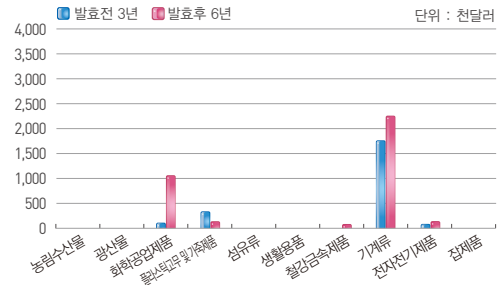
리히텐슈타인 주요 화학공업제품 수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 연마제품 등이다(MTI 3단위 기준). 정밀화학원료는 2006년 107천달러 수출에서 2012년 1,228천달러로 약 11.5배 증가하였다.

세계 정밀화학시장은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2조 2천억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정밀화학규모는 선진국 대비 가격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중저가 범용제품 위주로 수출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향후 세계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및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중심 산업으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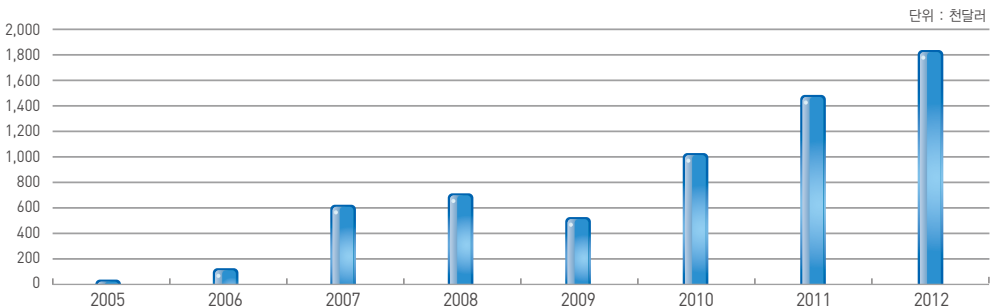
| 그림 3-11 | 리히텐슈타인 수출(2001-2012)



| 그림 3-12 | 리히텐슈타인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13 | 화학공업제품 FTA 발효전후 리히텐슈타인 수출변화(2005-2012)



14) 한국화학연구원(<http://www.kricr.re.kr>), 권영후(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원장) 인터뷰 기사 참고 작성

(2) 수입부문

① 스위스

스위스산 고부가가치 손목 시계 수입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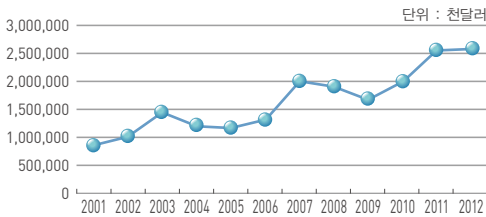
對스위스 수입은 한·EFTA FTA 발효 직전년 11.7억 달러('05년)에서 25.8억달러('12년)로 약 2.2배 이상 증가하였다. 스위스부터의 수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한·EFTA FTA 발효 전 3년 평균 수입은 1,274백만 달러에서 발효 후 6년 평균 2,117백만달러로 약 67%이상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철강금속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에서 수입이 증가하였다. 특히 기계류는 발효 직전년인 2005년에 비해 2012년 465백만달러의 수입액 순증가가 있었다.

기계류의 수입 증가를 주도한 것은 시계이다. 스위스로부터 수입되는 시계는 한·EFTA FTA 발효 직전년도인 2005년 77.6백만달러에서 2012년 383.3백만달러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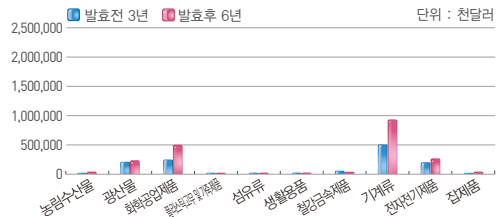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산 시계는 고가 제품으로 기존에도 수입수요가 존재하였던 품목이다.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대부분 손목시계로 나타났다. FTA 이후 손목시계의 기본세율 8%가 즉시 철폐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스위스에는 약 200여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이 있으며, 연간 2500만여개의 시계가 제조되고 있다. 스위스 시계산업은 제약·기계 산업 다음으로 전체 생산제품의 약 95%가 수출되는 등 스위스의 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⁵⁾

품질, 가격 등 경쟁력이 높은 스위스 시계 수입의 증가는 국내에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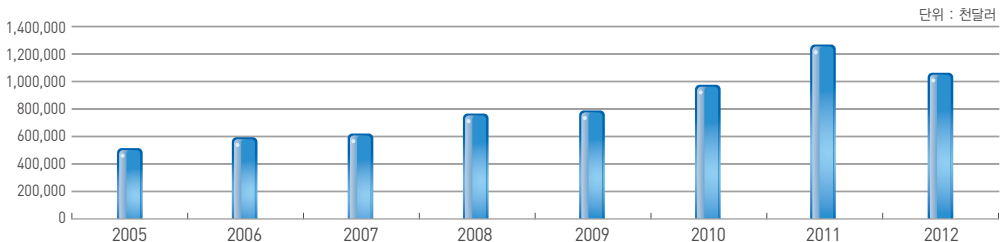
| 그림 3-14 | 對스위스 수입(2001-2012)



| 그림 3-15 | 對스위스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 그림 3-16 | 기계류 FTA 발효전후 對스위스 수입변화(2005-2012)



15) 신순재(2009), 스위스, 손목시계수요 꾸준히 증가세, 코트라

② 노르웨이 FTA 이후 2배 이상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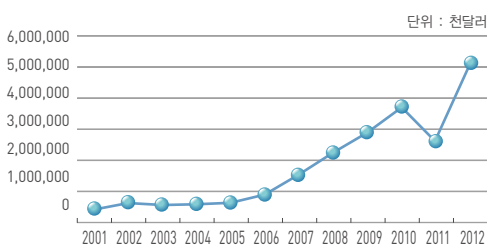
원동기 펌프 등 기계류 수입 증가

우리나라의 對노르웨이 수입은 한·EFTA FTA 이후로 급증하였다. 발효전 468백만달러에서('05년) 2012년 1,061백만달러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FTA 발효전'과 'FTA 발효후'를 비교하면, 산업별로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등 모든 품목군에서의 수입 증가가 있었다. 특히 기계류는 'FTA 발효전'보다 'FTA 발효후'에 4.1배 확대되었다. 對노르웨이 기계류 수입은 2005년 311백만달러, 2010년 2,088백만달러로 5.7배 증가하였다. 광산물은 2005년 36.2백만달러에서 2012년 2,454백만달러로 무려 89.8배 증가하였다. 이는 전술한 대로 최근 對EU 원유 수입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제제조치 등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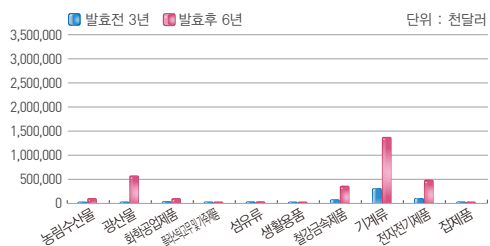
對노르웨이 기계류 수입 증가를 주도한 것은 원동기 및 펌프와 운반하역기계이다(MTI 3단위 기준). 원동기 가운데에서도 액체펌프 수입은 FTA 이전인 '05년 18.6백만달러에서 2012년 153.2백만달러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또한 운반하역기계수입은 2005년 19.5백만달러에서 2010년 338.7백만달러로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182.3억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3년 9월 말까지 252.9백만달러로 다시 증가하였다.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기계류는 대부분 중장비로서 심해 자원추출 및 항만 화물 운반기술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품목이며, 노르웨이에서 발달한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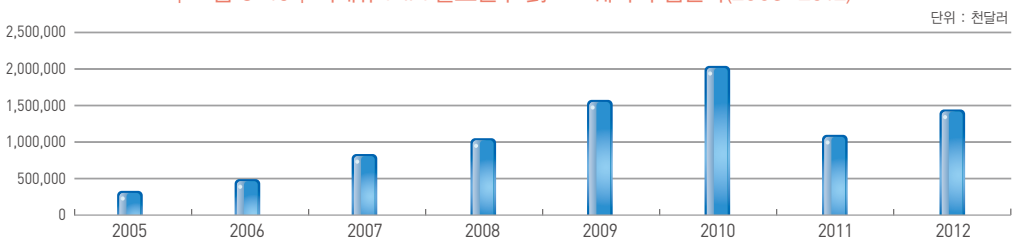
| 그림 3-17 | 對노르웨이 수입(2001-2012)



| 그림 3-18 | 對노르웨이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 그림 3-19 | 기계류 FTA 발효전후 對노르웨이 수입변화(2005-2012)



③ 아이슬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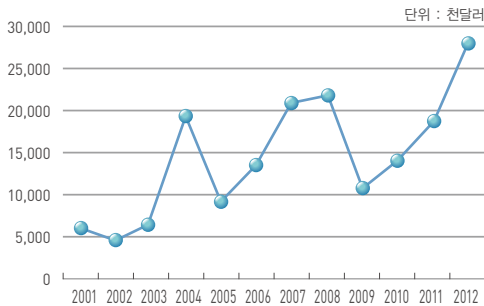
알루미늄 등 철강제품 수입 증가

對아이슬란드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다. FTA 직전해인 2005년 9,1백만달러였던 수입실적이 FTA 이후인 2012년 28,0백만달러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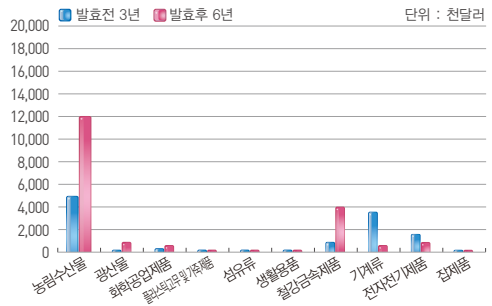
對아이슬란드 수입 품목은 농림수산물이 제1위로 'FTA 발효후' 총 수입액의 약 62.9%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2012년에 급증한 품목군은 철강금속제품이다. 수입액이 '05년 약 0,3백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11,8백만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對아이슬란드 주요 철강제품 수입품목은 알루미늄, 합금철선 및 고철 등이다. 이 중 2012년 알루미늄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아이슬란드는 어업과 더불어 알루미늄 제련이 주된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알루미늄은 2012년 중국, 일본, 독일, 아이슬란드 등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아이슬란드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알루미늄박은 기본관세 8%가 한·EFTA에 의해 0%를 적용받는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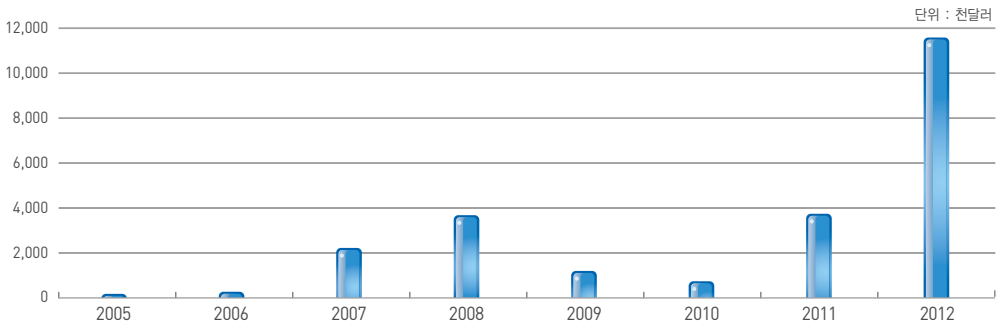
| 그림 3-20 | 對아이슬란드 수입(2001-2012)



| 그림 3-21 | 對아이슬란드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 그림 3-22 | 철강금속제품 FTA 발효전후 對 아이슬란드 수입변화(2005-2012)



④ 리히텐슈타인

의료위생용품(치과용충전제)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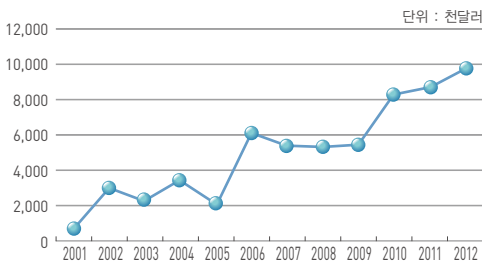
對리히텐슈타인 수입은 한·EFTA FTA 전후로 확대 추세를 보이나, 수출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FTA 발효전 2,1백만달러에서('05년)에서 9,9백만달러('12년)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FTA로 인해 무역장벽이 낮아졌고 이것이 무역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화학공업제품, 잡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에서의 수입확대가 있었으며, FTA 이전에 수입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였던 농림수산물, 광산물, 생활용품 등은 신규 품목이 수입되었다. 특히 잡제품은 FTA 이후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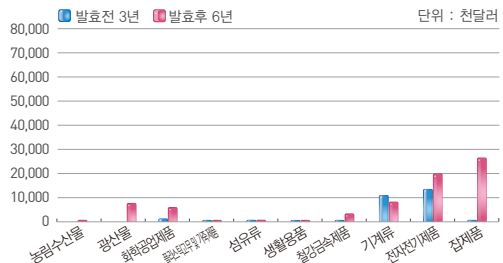
치과용충전제는 우리나라의 對리히텐슈타인 주요 수입품목이다. 동 품목은 FTA 발효 이전 수입실적이 0.5백만달러('05년)에 불과하였으나 FTA 발효 이후 3.8백만달러('12년)로 확대되었다. 국내 치과용충전제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對리히텐 슈타인 수입이 급증하였던 2010~2012년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1.5백만달러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리히텐슈타인 등 FTA 대상국으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품목의 10대 수입국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FTA 체결국으로 모든 협정에서 기본관세 8%가 동일하게 협정세율 0%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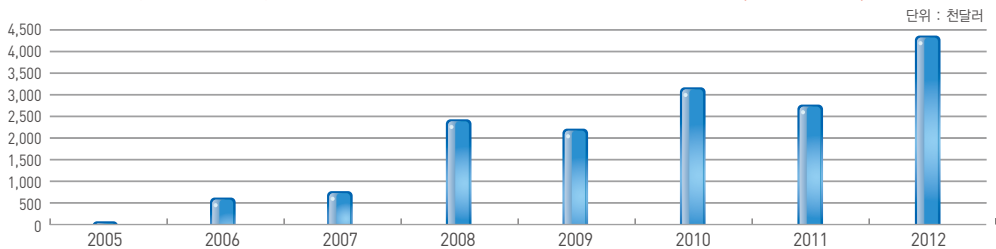
| 그림 3-23 | 對리히텐슈타인 수입(2001-2012)



| 그림 3-24 | 對리히텐슈타인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 그림 3-25 | 잡제품 FTA 발효전후 對리히텐슈타인 수입변화(2005-2012)



III. 한·EFTA FTA 발효 7년과 시사점

1) 한·EFTA FTA 무역의 불규칙성 불구하고 FTA 이후 수입 증대 효과

한·EFTA FTA는 기존 FTA 평가에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특히 수출면에서는 오히려 전체 금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선박류로 수출금액이 수주실적에 따라 해마다 편차가 높은 불규칙한 특성을 지닌다.

수입 역시 최근 이란제재 이후 노르웨이로부터 원유 수입이 급증하는 등 경제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세부 품목별로는 한·EFTA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 되면서 수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된다.

2) 고품질 특화 소비재, 산업용 재화 수입 증가

對EFTA 수입 품목은 정밀 기계, 고가의 소비재, 기호 식품, 정밀화학제품 등이다. 스위스산 시계, 노르웨이산 고등어·훈제 연어, 커피 등은 국내 소비자들이 FTA에 의한 품목 다양화, 국내 시장 공급 확대, 또 일부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품목이다. 이외에도 노르웨이산 펌프, 운반하역기계, 아이슬란드산 알루미늄, 리히텐슈타인산 치과용충전제 등은 국내 수입이 증가한 대표적 산업용 재화이다. 그러나 수입재는 상대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등 기술수준이 높아 단기에 국내산으로 대체는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對EFTA 수입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FTA 관세 하락에 의한 수입대체 효과

한·EFTA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절감에 의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철강금속제품 수입 가운데 일부 품목은 EFTA産으로 대체하는 품목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철은 한·EU FTA가 발효되기 이전시기인 2011년 이전에는 독일産 제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노르웨이産 수입이 증가하였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FTA 국가로 수입이 대체된 사례로 판단된다. 그리고 치과용 충전제의 경우 중국産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리히텐슈타인産 수입이 증가하였다. 두 품목은 모두 기본세율이 8%로 한·EFTA FTA 협정에 의해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産 제품은 0%의 특혜세율이 적용되었다. 즉 FTA로 인해 국내 수입선이 변경된 사례이다. 이러한 수입대체는 국내업체의 원가절감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EFTA FTA의 이행 경험, 한·EU, 한·미 FTA 이행에 기여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FTA 협정에 비해 교역량이 비교적 적은 국가이다. 실제 FTA 전후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EFTA FTA는 최초의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EU FTA를 이행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한·EU FTA는 다시 한·미 FTA의 이행에 전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EFTA FTA의 평가는 선진 경제권과의 선형적 FTA 이행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송경은(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 분석 배경 : 자동차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기간산업이다. 이른 바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 등 광범한 관련 공업제품(약 5,000여 종 2만여 개 부품)을 결합하여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종합기계 공업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FTA의 주요 수혜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미국, EU는 전통적인 자동차 수출시장이며, ASEAN, 칠레, 페루 등은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발전과 엔저에 따른 일본의 공세로 인해 세계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협정별 FTA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분석 범위 :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I. 자동차의 교역동향

1) 자동차 산업 교역동향

‘12년 자동차 산업 對세계 무역수지 617억달러 흑자 기록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¹⁶⁾과 관련한 2012년 對세계 수출은 718억 달러, 수입은 10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기계류(MTI 1단위 기준) 수출의 약 43.4%, 수입의 약 16.1%를 점유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2012년 자동차 산업의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은 319억달러, 수입은 66억달러였다. 2010년 자동차 산업의 對FTA 체결국 수출 비중은 8.9%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44.4%로 증가하였다.

수입 비중 역시 2010년 1.9%에서 2012년 65.0%로 확대되었다. 수출은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수입은 2011년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4-1 |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현황(2010-2012)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			수입		
	對세계	對FTA	FTA 점유율 ¹⁷⁾	對세계	對FTA	FTA 점유율
2010	544	48	8.9	85	2	1.9
2011	684	153	22.3	101	51	50.8
2012	718	319	44.4	102	66	65.0

16) 본 글에서 자동차 산업은 MTI 3단위 기준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을 말한다.

17) FTA 점유율은 對세계 수출(입) 실적 중 FTA 국가(당해년 발효 기준)로의 수출(입)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 수출

'12년 자동차 산업 對세계 수출 FTA체결국 7.0% 증가, 비체결국 3.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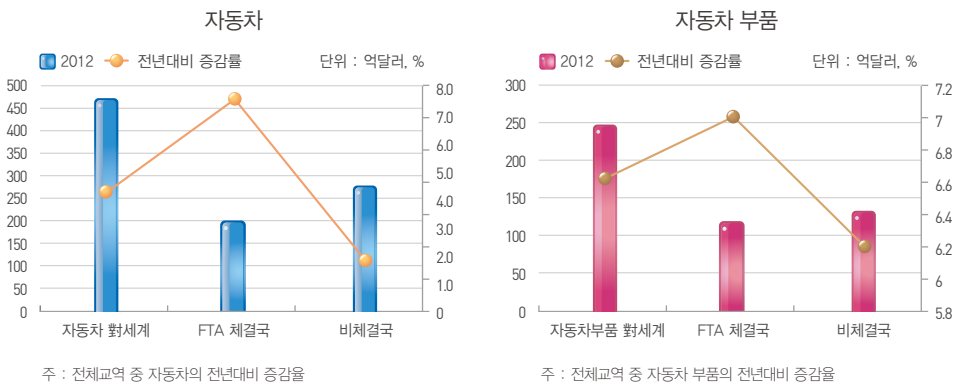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對세계수출액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0%증가하였는데, FTA 체결국으로는 7.0%, 비체결국으로는 3.2% 증가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FTA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완성 자동차는 對세계 수출이 약 4.2%증가한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는 7.5% 증가한 반면 비체결국으로는 1.8%에 그쳐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자동차 부품 역시 對세계 수출이 전년대비 6.6% 증가하였다. FTA 체결국으로는 7.0%, 비체결국으로는 6.2%가 증가하여 FTA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국가별 수출 동향은 다음과 같다. 201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상위 10대 수출국을 [표 4-2]로 나타내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캐나다 순으로 상위 10위 가운데 FTA 체결국은 미국, 칠레, 독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부품의 상위 10대 수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다. 이 가운데 FTA 체결국은 미국, 인도,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이다. 최근 동유럽으로 한국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의 진출에 따라 해당국가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FTA 체결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가운데 약 54%는 미국으로, 26%는 EU로 수출되어 양국가(군)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외 ASEAN 9%, 칠레 7%, 페루 3% 등으로 나타난다. 비체결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러시아연방이 14%, 사우디아라비아 9%, 호주 8%로 나타났다.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은 미국과 EU에 집중된 구조이며, 비체결 국가는 1개 국가의 점유율이 크지 않고 여러 국가로 분산된 것이 특징이다.

| 그림 4-1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금액과 수출증감률(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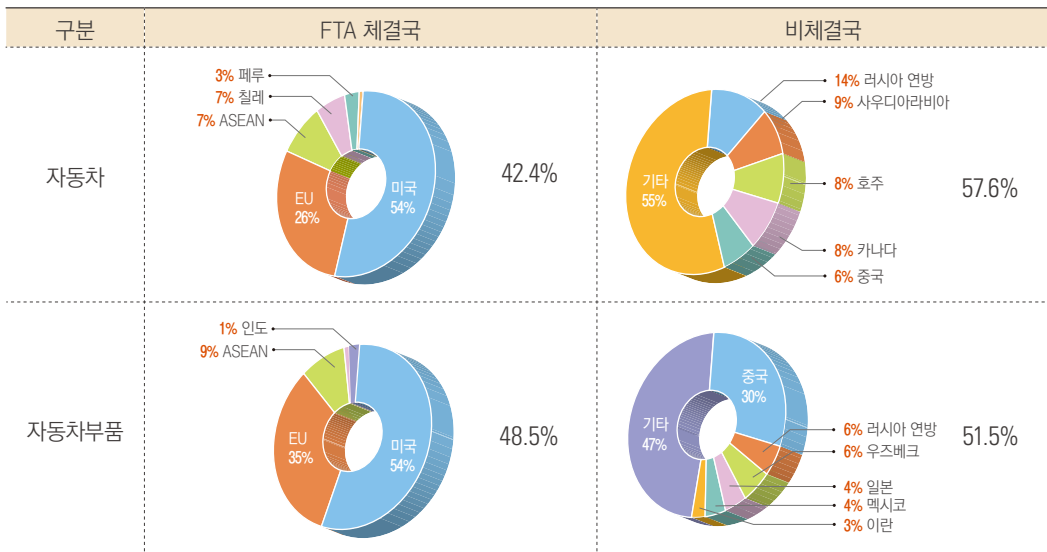
| 표 4-2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상위 10대 수출국(2012)

단위 : 천달러, %

구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	미국	10,833,099	21.2	미국	5,642,394	12.4
2	러시아 연방	3,762,918	16.7	중국	4,457,608	1.3
3	사우디아라비아	2,409,356	29.1	러시아연방	1,644,739	21.4
4	호주	2,333,768	1.1	인도	1,593,720	2.7
5	캐나다	2,190,685	28.6	브라질	1,116,058	72.6
6	중국	1,531,300	-34.6	체코공화국	940,761	12.2
7	칠레	1,262,364	7.3	슬로바키아	898,843	-13.7
8	독일	1,238,051	10.7	멕시코	796,309	13.9
9	요르단	1,114,094	18.1	우즈베크	789,789	5.4
10	브라질	1,100,494	-52.0	일본	780,655	12.7
	기타	19,425,247	0.1	기타	5,948,856	-2.4
	총계	47,201,376	4.2	총계	24,609,732	6.6

| 그림 4-2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국가별 수출 비중(2012)

단위 : %



주 : 동그라미 안의 수치는 전체수출에서 FTA 체결국/비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FTA 체결국의 경우 대부분을 미국과 EU에 수출하고 있는 구조이다. 비체결국 수출분의 약 30%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3공장이 중국에서 본격 가동되는 등 2000년대 이후 우리 기업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함에 따라 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중국 업체들의 국내산 자동차 부품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3) 수입

'12년 자동차 산업 對세계 수입 FTA체결국 10.0% 증가, 비체결국 -16.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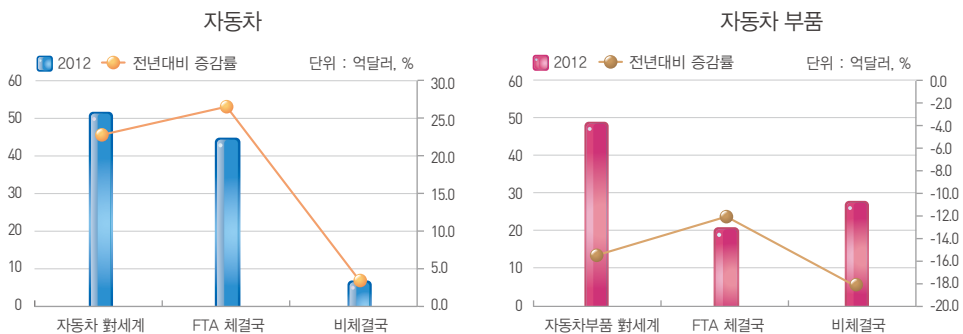
2012년 자동차 산업의 對세계수입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가운데 FTA 체결국은 10.0%의 증가가, 비체결국은 -16.7%의 감소가 있었다.

즉 자동차 산업의 수입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FTA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다.

반면, 일본 등 비체결국가산 물품의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성자동차는 對세계 수입이 약 22.8% 증가한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는 26.5% 증가한 반면, 비체결국으로는 3.4%에 그쳤다. 자동차 부품은 對세계 수입이 -15.7%감소한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는 -12.2%, 비체결국으로는 -18.1%로 역시 FTA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감소폭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상위 10대 수입국은 아래 [표 4-3]으로 나타내었다. 자동차산업은 전후 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첨단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산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입국은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순으로 상위 10위에 FTA 체결국인 독일,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4-3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금액과 수입증감률(2012)



주 : 전체교역 중 자동차의 전년대비 증감률

주 : 전체교역 중 자동차 부품의 전년대비 증감률

자동차 부품 상위 10대 수입국은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등이다. 최근 중국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등 성장 추세에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의 제1수입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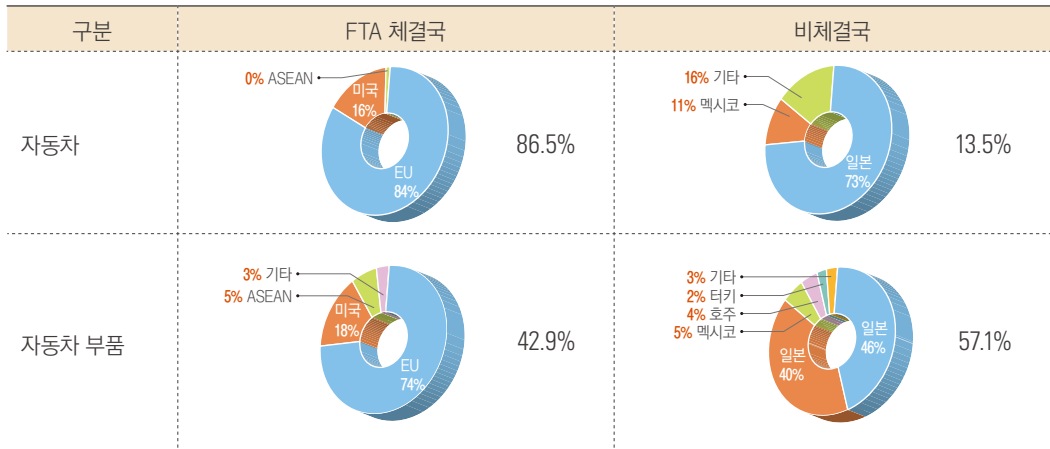
| 표 4-3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상위 10대 수입국(2012)

단위 : 천달러, %

구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	독일	3,043,770	17.6	중국	1,299,348	-5.4
2	미국	716,858	88	일본	1,147,322	-29.4
3	일본	522,887	7.1	독일	785,719	-16.8
4	영국	268,780	34.3	미국	365,645	-15.2
5	스웨덴	156,326	3.3	루마니아	270,863	107.7
6	멕시코	77,519	54.4	멕시코	129,545	74.7
7	네덜란드	59,874	-31.4	호주	108,590	-9
8	프랑스	57,345	-17.2	프랑스	95,794	-58.6
9	이탈리아	52,678	73.5	오스트리아	92,650	43.9
10	캐나다	49,027	29.4	터키	65,011	-61.2
	기타	234,292	28.2	기타	558,404	-17.3
	총계	5,239,356	22.8	총계	4,918,891	-15.7

| 그림 4-4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국가별 수입 비중(2012)

단위 : %



주 : 동그라미 안의 수치는 전체수입에서 FTA 체결국/비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EU(84%), 미국 (16%)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외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일본 73%, 멕시코 11%, 기타 11%로 나타난다. FTA 체결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미국과 EU, 비체결 국가는 일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FTA 체결국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과 EU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국 46%, 일본 40%, 기타 14%로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 자체는 중국과 일본 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자동차부품업체의 대형화 및 기술향상을 통해 해외 진출을 꾀하는 등 급부상하고 있다.

II. 자동차의 세부 품목별 교역동향

1) 수출

2012년 자동차 산업의 수출 상위 품목은 1,500cc시 초과 불꽃점화식 엔진 > 자동차부품 > 2,500cc시 초과 압축점화식 엔진 순이다. 상위 2개 물품이 전체 자동차 산업 수출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기타자동차 (71.6%), 2500cc시 초과 압축점화식 엔진(56.4%), 자동차부품(48.5%), 1,500cc시 이하 불꽃점화식 엔진 (47.1%)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주로 가솔린 엔진 장착된 1,500cc시를 초과하는 중대형 차량과 자동차부품이 주요 대상이다.

| 표 4-4 | 자동차의 세부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MTI 6단위	세부 품명	對FTA	對세계	FTA 비중
741150	불꽃점화식 1,500cc시 이하	2,447	5,200	47.1
741160	불꽃점화식 1,500cc시 초과	12,153	30,512	39.8
741170	압축점화식 2,500cc시 이하	3,621	6,419	56.4
741180	압축점화식 2,500cc시 초과	52	255	20.6
741190	기타승용차	0.2	2	14.8
741200	화물자동차	1,263	4,050	31.2
741300	특장차	55	205	27.0
741900	기타자동차	400	559	71.6
742000	자동차부품	11,946	24,610	48.5

2) 수입

2012년 자동차 산업의 수입 상위 품목은 자동차부품 > 1,500cc시 초과 불꽃점화식 엔진 > 2,500cc시 초과 압축점화식 엔진 순이다. 상위 2개 물품의 점유율은 71.1%에 달한다. FTA 체결국가로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특장차(97.8%) > 2500cc시 초과 압축점화식 엔진 자동차(95.9%) > 2500cc시 이하 압축점화식 엔진 자동차(95.3%) > 화물자동차(92.3%)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42.3%), 기타승용차(6.5%)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對FTA 수입이 50%이상을 점유하였다. 한편 자동차 산업 관련 對FTA 수입 금액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FTA 비중은 42.3%를 차지한다. 완성차로는 1,500cc시 초과 불꽃점화식 엔진차량과 2,500cc시 이하의 압축점화식 엔진차량이 주요 수입 대상이다.

III. 자동차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1) 자동차 FTA 특혜 수출

‘12년 FTA 특혜 수출 상위국 EFTA > 페루 > EU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 자동차 산업 중 FTA 특혜가 가능한 'FTA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약 191억달러이다. FTA 대상 수출품목의 구성은 자동차부품이 113억 달러(59.3%), 2,500cc시 이하의 압축점화식 엔진 자동차 34.1억달러(17.8%), 1,500cc시 이하의 불꽃점화식 엔진 자동차 19.3억달러(10.1%), 1,500cc시 초과 불꽃점화식 엔진 자동차 16.6억달러(8.7%)로 나타났다.

한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FTA 활용수출액은 약 156억달러로 약 81.5%의 높은 활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 표 4-5 | 자동차의 세부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

MTI 6단위	세부 품명	對FTA	對세계	FTA 비중
741150	불꽃점화식 1,500cc시 이하	14	26	52.9
741160	불꽃점화식 1,500cc시 초과	1,823	2,309	79.0
741170	압축점화식 2,500cc시 이하	1,405	1,474	95.3
741180	압축점화식 2,500cc시 초과	695	725	95.9
741190	기타승용차	2	34	6.5
741200	화물자동차	181	197	92.3
741300	특장차	138	141	97.8
741900	기타자동차	266	335	79.6
742000	자동차부품	2,080	4,919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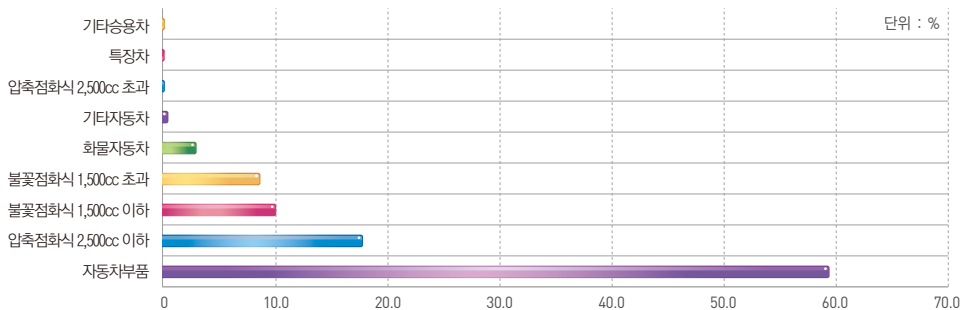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EFTA(99.4%) > 페루(97.7%) > EU(96.6%) > 칠레(92.9) > 미국 (85.9%) > ASEAN(6.3%) > 인도(0.02%) 순으로 조사되었다. FTA 활용 수출비중은 특히 아시아권인 ASEAN과 인도 등에서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다음과 같은 FTA 수출 활용 특징을 보인다. 자동차 산업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FTA대상 총수출액'의 약 46%는 EU가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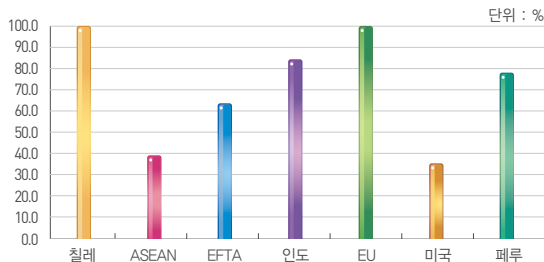
EU는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품목이 FTA 특혜 대상으로 시장 개방도가 높으며 대부분이 특혜수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산지 관리의 신속한 체계 확립과 FTA 활용 수출확대에 주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FTA 대상 총 수출액'의 약 30.8%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FTA 특혜대상이 되는 품목은 전체 자동차 산업 수출의 약 35%에 불과하여 현재까지의 개방도는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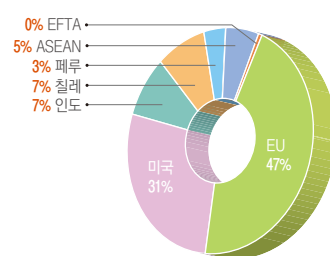
| 그림 4-5 | FTA 특혜수출대상 내 품목별 비중(MTI 6단위 기준)



| 그림 4-6 | 자동차 총수출액 중 'FTA 특혜대상' 비중*



| 그림 4-7 | 'FTA대상 총수출액' 내 국가별 비중**



* : 對FTA 협정국 자동차산업 총수출액 가운데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출금액의 비중

** : 對FTA 협정국 자동차산업 총수출액 중 FTA 특혜대상총수출액의 국가별 비중

승용차 등 자동차 관세가 미국 내에서 4년간 유지되는 방식으로 추가협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동차는 2012년에는 FTA 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물품은 관세면제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96%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한·미 FTA 제2.10조에 의거 원산지상품은 건당 최소 25\$에서 최대 485\$를 징수하는 물품 취급수수료를 면제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한·미 FTA의 부가적인 혜택이다.

인도는 'FTA 대상 총 수출액'의 약 7%를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완성차는 양허제외 대상으로 개방품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FTA 특혜 대상품목은 99.9%가 자동차부품이다.

그러나 對인도 수출분은 FTA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내 세관행정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FTA 활용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 수출담당자는 “긴급 조달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통관자료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인도 세관에서 '先사본 제출 後원본 제출'을 불인정하는 행정조치로 인해, 관련 물품의 FTA 특혜세율신청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FTA 활용시 장애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인도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ASEAN은 'FTA 대상 총 수출액'의 약 5.4%를 점유하고 있다. ASEAN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자동차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개방의 속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국가별 자동차 관련 물품의 FTA 대상 수출은 태국이 약 5.3억 달러(52%), 인도네시아가 2.6억 달러(26%), 나머지 8개국이 22%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FTA 활용비율은 약 35%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ASEAN 시장은 '제2의 일본'이라고 불릴 만큼 일본 업체들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ASEAN 역시 자국 자동차 산업의 육성 보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최근 ASEAN의 자동차 시장은 2017년까지 연평균 10.6%의 성장률로 증가, 연간 판매량이 40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자동차 생산국으로부터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¹⁸⁾ 對ASEAN 자동차 수출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도 한·ASEAN FTA를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 업체별 FTA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ASEAN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칠레, 페루, EFTA는 각각 'FTA 대상 총 수출액'의 6.9%, 2.7%, 0.6%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로의 자동차 관련 FTA 활용 수출은 대부분이 90%이상으로 원활하게 FTA가 이행되고 있다.

18) 김응창·이준호(2013), 세계 자동차시장, 상반기 특징 및 전망,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 자동차 FTA 특혜 수입

'12년 FTA 특혜 수입 상위국 EU > 미국 > EFTA 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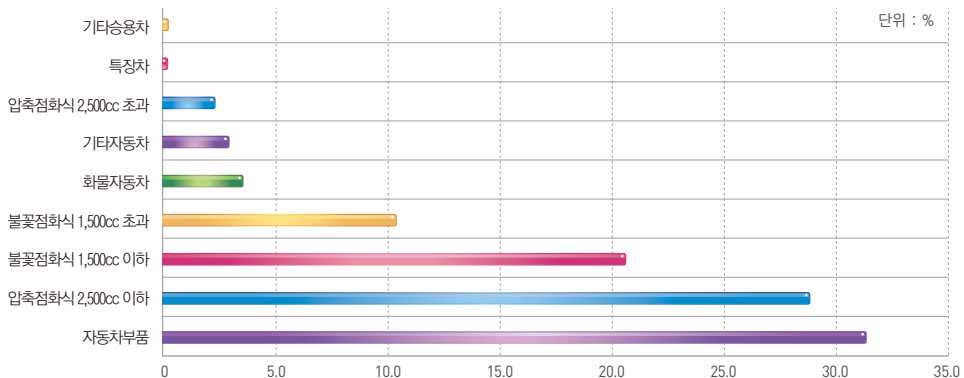
2012년 자동차 산업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약 67.5억달러이다. FTA 대상 수입품목의 구성은 자동차부품이 21.3억 달러(31.6%), 2,500cc이하의 압축점화식 엔진 자동차 19.2억달러(28.5%), 1,500cc이하 불꽃점화식 엔진 자동차 14.2억달러(21.1%), 2,500cc초과 압축점화식 엔진 자동차 7.2억달러(10.8%)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FTA 활용수입액은 약 56.5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관련 품목 수입의 약 83.8% 수준으로 높은 활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EU(91.9%) > 미국(58.0%) > EFTA(40.1%) > 인도(35.5%) > ASEAN(34.9%) 순으로 조사되었다. 칠레와 페루는 FTA 특혜를 적용받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총 2만 달러 이하에 불과하다.

국가별로는 다음과 같은 FTA 수입 활용 특징을 보인다. 2012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FTA대상 총수입액' 67.5억달러의 약 85.3%인 52.5억달러 EU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EU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관련 물품의 91.9%가 FTA 특혜 수입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되고 있다. EU로부터 수입되는 FTA 특혜대상 세부 품목은 자동차부품(15.2억달러) > 불꽃점화식 1,500cc초과(14.1억달러) > 압축점화식 2,500cc이하(12.8억달러) 등이다. EU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관련 물품의 FTA 활용 수입 비중은 91.9%로 국내 수입차 시장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 그림 4-8 | FTA 특혜수입대상 내 품목별 비중(MTI 6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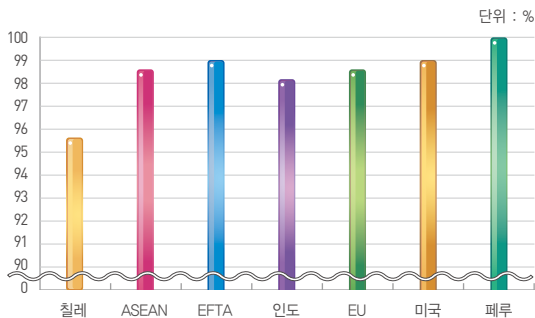
특히 수입차는 한·EU FTA가 발효되기 이전 시기인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6.9% 점유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10%로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판매된 수입차의 74.3%가 유럽산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디젤차와 소형차 부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 모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유럽산 디젤엔진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소음과 매연을 크게 줄이고 클린 디젤-친환경 동력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유가 추세에 효율적 연비를 실현하는 유럽산 디젤 자동차가 관세하락에 의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어 더욱 선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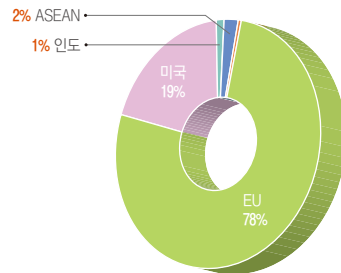
對미국 자동차 관련 수입은 약 13.2억달러로 'FTA대상 총수입액' 가운데 약 13.6%를 점유한다. 미국으로부터의 FTA 특혜 대상세부 품목은 불꽃점화식 1,500시시 초과(51.4억달러) > 자동차부품(44.9억달러) > 압축점화식 2,500시시 초과(18.6억달러) > 압축점화식 2,500시시 이하(13.9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관련 물품의 FTA 활용 수입비중은 평균 5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ASEAN, EFTA, 칠레, 인도로 부터는 완성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관련 수입은 3%에 불과하며, FTA 수입활용도 비중도 낮으나 자동차 관련 수입시장 내에서의 중요도와 영향력은 낮은 편이다.

| 그림 4-9 | 자동차 총수입액 중 'FTA 특혜대상' 비중*



| 그림 4-10 | 'FTA대상 총수입금액' 내 국가별 비중**



* : 對FTA 협정국 자동차산업 총수입액 가운데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의 비중

** : 對FTA 협정국 자동차산업 총수입금액 중 FTA 특혜대상총수입액의 국가별 비중

3) 자동차 원산지 결정기준과 FTA 특혜 수출 검토

엄격한 자동차산업 원산지 결정기준 FTA 활용률 영향 가능

자동차는 약 5,000여종 2만 여개의 부품을 결합하여 최종상품을 생산하는 종합산업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특혜수출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문이다.

자동차는 HS 6단위로 총 34개 세번이 부여되어 있다. 관련된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 부가가치, 선택, 결합 등 4개로 구분되며, 각 협정별로 특징을 지닌다. 한·칠레, 한·미, 한·페루, 한·EU FTA는 부가가치 기준에 약 70%이상이 집중된 구조이다. EFTA는 선택 기준, 인도는 결합기준에 의한다. 마지막으로 ASEAN은 부가가치기준과 선택기준이 반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분포는 협정별로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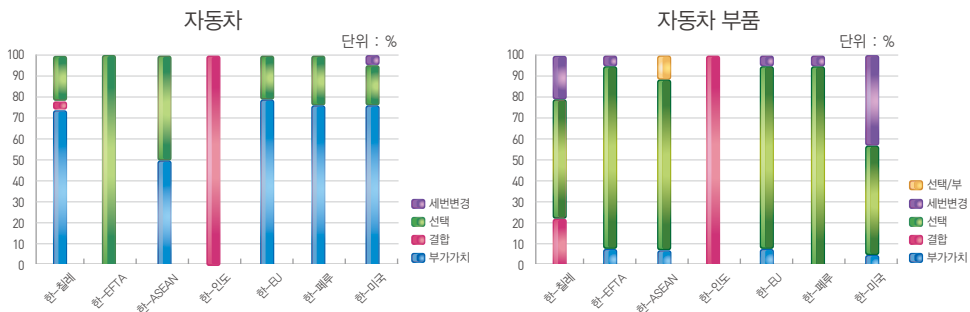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은 HS 6단위로 총 43개 세번이 부여되고 있다. 관련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5개로 자동차와 동일한 4가지 기준과 하나의 세번 내에 품목에 따라 선택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나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협정별로는 한·EFTA, 한·ASEAN, 한·EU, 한·페루 FTA 등이 80%이상이 선택기준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부품도 역시 결합기준에 의한다. 반면 한·칠레와 한·미 FTA는 선택 기준과 세번변경기준, 결합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2012년 실제로 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FTA 특혜대상수출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동차는 한·칠레, 한·EU, 한·페루, 한·미 FTA는 원산지결정기준 가운데 부가가치기준으로 수출된 것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으며, 세번변경, 선택기준에 의한 수출 비중은 매우 적다.

그림 4-11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한·ASEAN FTA는 약 83.6%는 부가가치기준 나머지 16.4%는 선택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한·EFTA는 모든 품목이 선택기준, 한·인도 CEPA는 결합기준에 의한 다. 다시말해 협정별로 자동차 산업에서 실제 활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이 선택기준에 따른다. 한·페루, 한·EU, 한·칠레, 한·미 FTA 대상 수출금액의 90%이상이 선택기준에 의한다. 한·EFTA FTA는 80.1%가 선택기준, 나머지 19.9%는 부가가치 기준이며, 한·ASEAN FTA는 선택기준이 61.8% 부가가치 기준이 약 26.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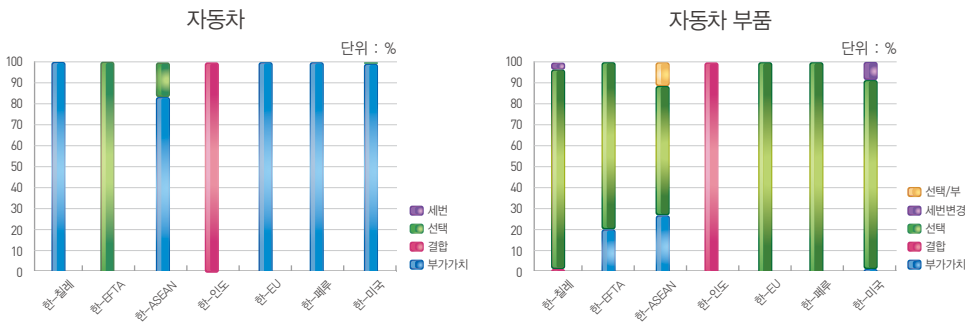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HS 6단위 상위 3개 품목¹⁹⁾에 대하여 7단위 척도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를 부여해보면 FTA 활용과 원산지결정기준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된다. 엄격성 지수는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지수가 부여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다. 엄격성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H)로 각각 6, 4, 2점이 부여된다.

그리고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 혹은 특수공정기준이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더 엄격해졌다고 간주 각각 7, 5, 3점이 부여된다.²⁰⁾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자동차는 한·ASEAN FTA가 5로 가장 높은 엄격성지수가 도출된 반면, 한·미 FTA가 2로 엄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는 4로 동일하였다. 자동차 부품은 한·인도 CEPA가 5로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아세안이 4.5로 도출되었다. 한·미 FTA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엄격성 지수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FTA 활용률은 한·ASEAN과 한·인도 CEPA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해당국가로의 수출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수출시장에서 높은 비중은 아니나 타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하나의 장애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FTA특혜 수출의 원산지결정기준별 비중



19) 해당 품목 6개 품목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체 수출의 70.2%를 점유한다.

20) 김한성 외(2008),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표 4-6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상위3개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 지수와 활용비중
엄격성 지수

구분	세번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자동차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하고 1,500cc 이하인 것	4	4	5	3	4	4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4	4	5	3	4	4	2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2,500cc 이하인 것	4	4	5	3	4	4	2
	평균		4	4	5	3	4	4	2
자동차 부품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4	4	4	5	4	4	2
	870840	기어박스	4	4	4.5	5	4	4	2
	870899	기타	4	4	5	5	4	4	2
	평균		4	4	4.5	5	4	4	2

주 : 엄격성 지수는 1~7을 부여하며, 7이 가장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수준을 의미한다.
자동차 : 한·아세안 FTA 엄격성 지수 가장 높음 / 한·미 FTA 엄격성 지수 가장 낮음
자동차 부품 : 한·인도 CEPA 엄격성 지수 가장 높음 / 한·미 FTA 엄격성 지수 가장 낮음

FTA 활용 비중

단위 : %

구분	세번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자동차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하고 1,500cc 이하인 것	97.8	100.0	2.6	-	99.8	96.9	-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95.2	99.9	4.5	-	99.8	98.7	-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2,500cc 이하인 것	85.8	100.0	40.3	-	99.7	70.5	-
자동차 부품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 속품	97.2	100.0	23.9	-	97.3		88.8
	870840	기어박스	100.0		11.7	-	99.7		96.2
	870899	기타	77.2	69.3	0.3	0.02	92.6		81.1

주 : FTA 활용비중은 FTA 특혜대상금액 중 실제 C/O 발급 수출 비중을 의미
한·아세안 FTA FTA 활용비중 가장 낮음

IV. 시사점 및 활용방안

1) 자동차의 FTA 활용, 무역 확대 긍정적 역할

2012년 자동차 산업 관련 FTA 국가와의 교역점유율은 수출은 44.4%, 수입은 65%에 달했다. 특히 FTA 국가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 양측에서 비FTA 체결국에 비해 전년대비 수출입 증가율도 높게 시현되어 전체 무역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對FTA 수출시장 개방도는 EU, 칠레, 페루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ASEAN, 미국 등에서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향후 이들 국가에 대해 추가개방이 이행되면 FTA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증가가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동차 부품의 FTA 체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친환경·경량화가 트렌드

자동차 생산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 확대에 따라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동반진출도 가속화 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국은 글로벌 소싱 확대로 자동차 부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자동차부품시장 내에 수입산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저가를 기반으로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중국산 물품의 성장세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최근 트렌드는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와 더불어 엄격한 품질관리, 공급선 안정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유망품목으로는 친환경, 경량화 부품으로 알려졌다. 즉 경량고장력 강판, 경금속 등 경량소재 부품, 직분사엔진, 듀얼클러치, 공회전방지장치, 공랭식 개폐시스템 등 친환경부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자동차 생산기업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¹⁾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세계 시장의 추세에 따라 친환경, 경량화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보다 역량 강화를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3) 신흥 시장, ASEAN 수출 대응 전략 마련

ASEAN은 세계자동차 시장에서 포스트-브릭스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태국, 인도네시아는 에코카 프로젝트²²⁾, 첫차 구입보조제, 저가 고연비차 보급정책 등 정부 주도의 저가차 시장조성으로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SEAN 시장은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의 빠른 증가,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성이 전망되는 잠재력이 큰 자동차 시장으로 평가된다. ASEAN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21) 코트라(2012), 한·미 FTA 활용 자동차부품 對美 진출 확대 방안

22) 소형 고연비 차량 대상 법인세/관세 면제 및 소비세 일부 감면혜택 제공

한편 한·ASEAN FTA와 관련하여 자동차 부문은 비교적 개방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양허 스케줄뿐만 아니라 원산지 결정기준도 다른 협정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낮은 FTA 활용비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베트남 FTA 논의 등 개별국과의 FTA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즉 ASEAN 시장 공략시 FTA가 주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4) EU 디젤 친환경, 소형 자동차 수입 대응 다양화 전략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수입차는 총 130,858대로 국내 자동차 시장의 10% 점유율을 돌파하였다. 판매된 수입차의 약 74.3%는 유럽산으로 나타났다. 한·EU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0년 유럽산 수입차는 65.4%에 불과하였으나, FTA 이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 및 순증가율을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은 대부분이 디젤차량으로 상대적으로 국내산 차종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부문이다.

게다가 최근 EU 자동차 업계는 젊은층을 타겟팅하여 저배기량 차량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수입차 배기량별 판매는 2000cc 이하가 전체의 52.2%를 점유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30.3%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국내산 조달 비중 높은 편이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친환경 디젤차량 개발 및 젊은층의 구매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5) ASEAN, 인도 등 개발국 세관 협력 강화

2012년 ASEAN과의 교역은 FTA가 발효된 2007년 대비 수출은 2.0배, 수입은 1.6배 무역수지는 4.8배 증가하였다. 인도 역시 동기간 수출은 1.8배, 수입은 1.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ASEAN 및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FTA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사항은 긴급시 발생하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 상대국 세관에서의 통관 지연 및 절차적 복잡성 등을 꼽는다. 이는 관련 기업의 의견 청취 및 세관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FTA 활용 무역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인 노력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6) 부가가치 기준의 이해 및 적극 활용 필요

완성 자동차와 관련된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이 부가가치기준에 집중되어 있다. 각 협정에서 정의된 부가가치 산출 방식은 협정별로 그 기준가격을 달리하거나 계산 방식이 상이하다.

부가가치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품목분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세번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세번변경기준과는 달리 각 기업별로 원재료 물품의 가격 기준 및 산출 방식 등 협정상의 용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한·미 FTA는 다른 협정과는 다르게 기계 및 자동차 물품에 한정하여 순원가법 적용이 가능하다.

순원가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제조원가에 기반하여 물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생산자는 원가관리를 통하여 물품의 순원가를 예측, 통제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수출자들은 NAFTA의 오랜 경험으로 순원가법의 사용에 익숙해져 있으며, 국내로 원자재 수출시 순원가법을 적용한 원산지 증명서를 주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내 완성제품 생산 및 수출자는 상대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이해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인터뷰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팀 이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 국민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 9월 1일 설립되었다. 국내자동차 생산기반이 있는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국내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대응, 통상관련 조정, 산업관련 조사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Q1. 세계 자동차산업의 환경은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세계 자동차산업 환경은 화석연료 고갈 및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비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요구가 나날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자동차기업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생존을 위하여 첨단 환경기술을 접목한 자동차 개발 및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전기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개발 및 상용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경쟁력 기반구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간 각고의 노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앞서가고 있는 연료전지차부문에서 양산체제구축과 함께 상용화가 진행된 점은 고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미래의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히, IT기술과 통신기술 등 융복합기술적용 환경이 보편화되는 패러다임 변화도 향후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FTA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세안, EU, 미국 등과의 FTA 발효 이후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13년 8월 현재 세계 197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입장에서 FTA를 통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도 고려해야 하나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극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FTA 체결 당시 아세안국가들의 자동차를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시장개방 효과가 미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한·인니, 한·베트남 등 아세안국가와의 개별 FTA진행으로 자동차시장개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양국의 자동차시장이 2016년에는 완전 개방될 예정(미국의 픽업트럭 제외)이며, EU 시장 역시 한·EU FTA를 통해 2016년까지 완전 개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조성은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에서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한국자동차산업으로서는 우리차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Q3. 거대선진국인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산업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혜택)와 기대는 무엇인가요?

한·미 FTA에서 미국의 승용차 관세는 2016년에 철폐될 예정으로 아직 관세인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EU FTA에 따른 EU 관세인하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산차의 대EU 수출차량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EU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세인하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EU산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등 국내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의 판매가 확대되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에 현지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동차기업은 현지 시장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최근 한·EU FTA 효과와 연비에 대한 관심으로 특히 EU산 디젤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자동차업계는 기존 모델의 디젤차 개발시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자동차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4. 최근 한·중 FTA가 1단계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가 타결되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 예측하시나요?

2단계 협상에서는 품목별 양허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중국의 자동차부문에 대한 시장개방 입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양측의 자동차시장이 개방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중국내 자동차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자동차기업은 물론 중국 로컬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내수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중국에 생산기반을 활용한 현지생산 및 판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한·중 FTA를 통한 수출 증대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협상 추이를 주시하며 보다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어떤 부문이 애로사항이며,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FTA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FTA를 통해 수출상대국의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이 해소를 이루는 것이 큰 목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부문에서는 FTA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는 원산지기준 충족과 무역절차 간소화 및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에게 보다 개선된 무역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입장에서 FTA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수출시 구비해야 하는 원산지증명관련 서류제출의 간소화 등 기업의 행정수요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중국을 제외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대부분 발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개선된 무역환경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 발효된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자구 노력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특집 : 유럽권 3개 FTA협정의 특징과 기업의 활용방안

진병진(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2013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9개 FTA협정 중 유럽권에 소재한 국가 또는 경제연합체와 맺은 협정은 3개로, 이들 협정은 유럽이 추구해 왔던 경제통합의 역사적 유산이 반영되어 여타의 FTA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협정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대륙권과 맺은 협정들에 비해 지니고 있는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권 3개 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 분석배경

2013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협정 수로는 총 9개, 국가 수로는 47개국²³⁾과의 FTA협정이 발효 중에 있다.

이 중 유럽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또는 경제연합체와 맺은 협정은 3개(한·EU, 한·EFTA, 한·터키)로 협정 수로는 33.3%에 불과하나, 발효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FTA협정 발효국(47개국)의 70.2%인 33개국이 유럽권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와 맺은 협정에 속해 있다.

표 4-7 | 유럽권 FTA협정(한·EU/한·EFTA/한·터키)과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수 출	수 입	교 역	수 출	수 입	교 역
對세계교역	555,214	524,413	1,079,627	547,870	519,584	578,671
對FTA체약국 교역	201,957	164,993	366,950	204,399	166,642	241,363
對세계비율	36.4	31.5	34.0	37.3	32.1	41.7
유럽권 FTA 교역	62,616	53,406	116,022	55,418	58,759	64,628
(對EU교역)	55,727	47,424	103,151	49,371	50,374	57,674
(對EFTA교역)	1,818	5,177	6,995	1,495	7,713	-1864
(對터키교역)	5,071	805	5,876	4,552	672	8,818
對세계비율	11.3	10.2	10.7	10.1	11.3	11.2
對FTA비율	31.0	32.4	31.6	27.1	35.3	26.8

23)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가 EU의 2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한·EU FTA협정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협정 발효국이 기존 46개국에서 47개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권에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들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FTA체약국과의 교역에서 유럽권 3개 협정 체약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유럽지역은 경제통합 및 교역자유화와 관련된 경험이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FTA의 이행방법에 있어 우리나라가 다른 대륙 및 지역권과 맺은 협정에 비해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유럽권 FTA협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협정이 다른 지역과 맺은 협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유럽권 3개 협정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활용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보고에서는 유럽권 3개 FTA협정이 우리나라가 다른 대륙권 및 국가들과 맺은 FTA협정들에 비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확인해 보고, 이들 특징들을 이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유럽권 FTA협정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유럽권 FTA협정의 특징

1. 간편한 원산지증명방식

유럽권 3개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으로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발급'에 비해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어 FTA활용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럽권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자율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나 한·칠레 FTA와 비교해 보아도 유럽권 협정이 보다 간편한데, 칠레의 경우 통일서식을 사용하여야 하고 미국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²⁴⁾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 반해 유럽권 협정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정해진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의 간편성이 매우 높다.

다만, 유럽권 3개 협정 중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²⁵⁾을 취득하여야만 자율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며, 한·터키 FTA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24)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아래의 요소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기재)	⑤ HS코드 및 품명
②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⑥ 원산지정보
③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⑦ 증명일
④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⑧ 유효기간(포괄증명일 경우)

25) 인증수출자는 수출업체에 관계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협정 및 모든 생산품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특정 협정 및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자격을 부여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두 가지가 있다.

② 특이한 부가가치계산방식

유럽권 협정을 제외한 다른 협정들이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에 있어 부가가치의 계산을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역내부가가치 기준(RVC : Regional Value Contents)'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권 3개 협정은 유럽이 그간 맺어 온 FTA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역외산 재료의 최대 함량을 제한하는 '역외산재료 최대 허용법(MC : Imports Contents)'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부가가치 계산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품가격의 산정방법에서 발견되는데, RVC법의 경우 분모가 되는 상품가격을 FOB가격(FOB : Free On Board)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유럽권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MC법은 공장도 가격(EXW : Ex-Works)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FOB가격은 일반적으로 공장도가격(EXW)에 국내운송비와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RVC법의 경우 계산 시 분모 값이 MC법에 비해 크다는 특징이 있다.

■ 부가가치기준 계산사례²⁶⁾

	[품명] 냉동 및 냉장기구	투입요소내역														
수출물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원산지재료비</td> <td>200</td> </tr> <tr> <td>비원산지재료비</td> <td>400</td> </tr> <tr> <td>노무비 및 이윤 등</td> <td>280</td> </tr> <tr> <td>국내운송비</td> <td>50</td> </tr> <tr> <td>국제운송비 및 보험료</td> <td>70</td> </tr> <tr> <td>합계</td> <td>1,000</td> </tr> </tbody> </table>	구분	금액	원산지재료비	200	비원산지재료비	400	노무비 및 이윤 등	280	국내운송비	50	국제운송비 및 보험료	70	합계	1,000
		구분	금액													
원산지재료비	200															
비원산지재료비	400															
노무비 및 이윤 등	280															
국내운송비	50															
국제운송비 및 보험료	70															
합계	1,000															
부가가치 계산	<p>한·ASEAN FTA(계산방식 : 공제법)</p> $\frac{\text{FOB 가격}(93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00)}{\text{FOB 가격}(930)} \times 100 = 56.9\%$															
	<p>한·EU FTA(계산방식 : MC법)</p>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00)}{\text{EXW가격}(880)} \times 100 = 45.4\%$															
계산방법 차이	<p>① 분모 추출방법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법의 경우 분모가 되는 상품가격의 산정 시 전체 투입요소에서 국제운송비 및 보험료만 제외하지만, MC법은 국내운송비도 제외 <p>② 분자 추출방법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법의 경우 추출된 FOB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비해, MC법은 비원산지재료비를 직접 대입 															

26) 한·아세안 FTA와 한·EU FTA가 모두 냉동 및 냉장기구(HS 제8418.69호)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부가가치 기준 계산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계산사례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MC법은 계산공식이 하나인 반면 RVC법의 경우 공제법(BD : Build Down Method)·집적법(BU : Build Up Method)·순원가법(NC : Net Cost Method)²⁷⁾의 3가지 계산방법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MC법과 RVC법의 부가가치기준 계산방식 상 차이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면, 냉장 및 냉동기구(HS 제8418.69호)에 대해 한·ASEAN FTA는 공제법(BD : Build Down)으로 계산한 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한·EU FTA는 MC법으로 계산한 역외산 재료의 사용비율이 50%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완화된 세번변경기준 적용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9개 협정 중 한·EU 및 한·터키 FTA를 제외한 7개 협정들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을 적용할 때, 완제품과 동일한 호(Heading)에 분류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비원산지물품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완제품과 4단위 세번이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체결당사국 내에서 본질적인 제조·가공공정이 수행되고 이를 통해 세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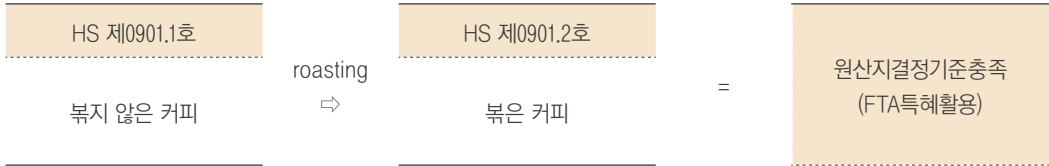
반면, 유럽권 3개 협정 중 한·EU 및 한·터키 FTA는 일부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일부 품목²⁸⁾에 대해 동일 호(Heading)의 비원산지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체결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4단위 기준에서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로서 하여금 재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으며, 수출자의 FTA활용 가능성 또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 표 4-8 | 한·EU 및 한·터키 FTA 류별 4단위 세번변경 동일 호 포함 현황

류	09	류	15	류	25	류	38	류	68	류	81
개수	3	개수	4	개수	4	개수	1	개수	1	개수	13
류	11	류	19	류	27	류	39	류	71	류	95
개수	1	개수	2	개수	15	개수	1	개수	3	개수	1
류	13	류	21	류	30	류	44	류	74	류	96
개수	1	개수	1	개수	2	개수	2	개수	1	개수	3

27) 순원가법(NC : Net Cost)은 한·미 FTA협정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만 적용되는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이다.

28) 한·EU 및 한·터키 FTA에서는 HS 4단위 기준으로 59개 세번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동일 호(Heading)가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EU 및 한·터키 FTA에서 '동일 호가 포함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²⁹⁾이 적용되는 HS 제0901호의 커피의 경우 볶지 않은 커피(HS 제0901.1호)를 수입(비원산지물품)하여 체약당사국에서 볶음(roasting)공정을 거쳐 볶은 커피(HS 제0901.2호)를 생산하면 4단위 수준에서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유럽권 협정에 속하는 한·EFTA FTA의 경우 볶은 커피(HS 제0901.2호)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5%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볶지 않은 커피(HS 제0901.1호)를 비원산지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할 수 없어 한·EU 및 한·터키 협정에 비해 원재료 선택에 제약이 발생한다.

4. 엄격한 영해 밖 채포 수산물의 원전생산물품 간주 요건

어류 등 수산물이 영해 밖에서 어로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경우 원전생산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FTA협정들이 공통적으로 당사국의 선박에 의해 어로행위가 이루어지고 가공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당사국의 선박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유럽권 협정을 제외한 여타의 협정들은 공통되게,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되고 조업 당시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권 3개 협정 중 한·EU 및 한·터키 FTA는 여기에 더해 선박의 소유권 중 50% 이상이 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소유권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어, 역내선박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EFTA FTA는 역내선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국기게양'만을 제시하고 있어 전체 FTA협정 중 가장 쉽게 역내선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표 4-9 | 협정별 역내선박 인정요건

적용협정	EFTA	칠레, 싱가포르, 인도, 아세안, 미국, 페루	EU, 터키
인정요건	국기게양	국기게양+등록	국기게양 + 등록 + 소유

29) 일반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약어로 표시할 때 'CTH(Change of Tariff Heading)'를 사용하는데, 한·EU 및 한·터키 FTA에서 허용하고 있는 '동일 호가 포함된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은 이와 구분하기 위해 'within CTH'를 사용한다.

5 동물성생산물 원산지결정기준 차이

HS 제1류에 분류되는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모든 FTA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WO : Wholly Obtained)'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에서 '출생하여 사육되고 살아있는 동물'이어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동물성생산물³⁰⁾의 경우 대다수의 FTA들이 '출생+사육+생존'의 요건이 충족되는 원산지물품(동물)으로부터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EU FTA는 '사육+생존'의 요건이 충족되는 동물로부터 얻어진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있다.

즉, 한·EU FTA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출생하지 않고 수입되어 체약당사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사육되고 있는 동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라 하더라도 FTA특혜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여타의 협정들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용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동물성생산물에 대해 체약당사국 내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이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EU와의 협정보다 더욱 완화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6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상 차이

유럽권 3개 협정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어 FTA협정의 이행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정을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에 있어서는 체약당사국의 산업적 특성 및 교역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해 차이가 존재한다.³¹⁾

유럽권 3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각각의 유형에 적용되는 HS 6단위 기준 세번의 수는 아래의 [표 4-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EU FTA와 한·터키 FTA는 유형별로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³²⁾ 반해 한·EFTA FTA는 동일 대륙권에 속해 있는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형태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 동물성 생산물의 완전생산품 인정요건

적용협정	한·미 FTA	한·EU FTA	기타 FTA
인정요건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	사육되고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

30) 동물성생산물에는 대표적으로 HS 제02류의 「육과 식용 설육」, HS 제04류의 「낙농품·조란·천연꿀 등」, HS 제05류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동물성생산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포함되며, 동물성생산물이 일부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HS 제15류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HS 제19류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3류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등이 있다.

31) 원산지결정기준은 체약당사국 간의 산업구조 및 교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협정별·품목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복수의 협정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각각의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32) 한·EU FTA와 한·터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유사한 이유는 터키가 1964년 EU와 자유협정을 맺어 일종의 준회원국 자격을 취득한 후, 1987년부터 EU에 정식 가입을 시도하게 되고 1996년 EU와의 관세동맹이 정식으로 발효되게 됨에 따라 향후 EU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EU와 제3국이 맺은 FTA의 협정을 거의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4-11 | 유럽권 3개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단위 : 개

구 분	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선택기준	결합기준	기타유형
EFTA	488	1,661	172	1	2,336	390	4
EU	411	1,218	302	858	1,983	266	14
터 키	411	1,225	302	858	1,983	259	14

- 주 : 1. 각 유형별 개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2. 협정에서 '특정한 공정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와 '특정 물품으로부터의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가공공정기준으로 분류.
 3. 기타유형에는 특정재료의 중량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 일반적 기준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를 분류.

〈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 1) 완전생산기준 : 다른 국가의 재료(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되어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2) 세번변경기준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3) 부가가치기준 :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4) 가공공정기준 : 물품의 제조공정 중 각 물품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물품의 주요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가공작업을 열거하여 지정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5) 선택기준 : 둘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6) 결합기준 : 둘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들 모두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즉, 한·EU 및 한·터키 FTA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한 협정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일 경우, 나머지 한 개 협정도 FTA 특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III. 유럽권 FTA협정 활용 방법

FTA활용 무역에 있어 원산지증명방법이나 원산지결정기준 등 특혜활용 방법의 유사성은 기업의 FTA활용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유럽권 3개 협정의 경우 제도의 유사성에 더해 우리나라의 전체 FTA 발효국 중 70.2%인 33개국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활용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역이며,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한 FTA특혜 동시 활용의 가능성 또한 높은 지역이다.

또한 유럽권 3개 협정은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다른 지역(대륙)권과의 협정들과 비교해 볼 때 계약당사국 간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 및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인해 협정의 이행방법 및 협정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활용 편의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따라서 유럽권 FTA협정이 지니고 있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1 원산지결정기준의 동일성 활용

FTA협정 간에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할 경우 하나의 협정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면 당해 품목에 대해 다른 협정들 또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의 투입 및 관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비용적·시간적 소모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EU와 한·터키 FTA는 특혜활용을 위한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이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에 한·EU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별도의 준비과정 없이 한·터키 FTA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 2개 협정은 동물성 생선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³³⁾

2 원산지증명방식의 유사성 활용

유럽권 3개 협정은 다른 협정에 비해 간편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어 FTA활용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터키 FTA를 제외한 한·EU 및 한·EFTA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에 있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한 개 협정에 대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준비과정을 활용하여 나머지 협정에 대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³⁴⁾

아울러 한·EU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비록 인증수출자 자격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한·터키 FTA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33) 동물성 생선품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대표적인 품목으로 유럽지역의 경우 터키 및 EFTA에 대한 수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EU에 대해서만 일부 수출되고 있어, EU와의 협정에서 다른 협정들에 비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요건이 당해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34)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인증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준비 등 제반절차는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인증취득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③ 부가가치계산방식의 동일성 활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권 3개 협정은 부가가치의 계산에 있어 다른 협정들과는 차별화된 기준과 방법을 공통되게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특성상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 회계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유럽권 3개 협정이 지니고 있는 부가가치 계산방식의 공통성은 원부자재 및 각종 비용관리 등 회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개 협정에 대해 완비할 경우 나머지 협정도 별도의 노력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즉,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계적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3개 협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원산지관리와 검증에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④ 완화된 세번변경기준 활용

유럽권 협정 중 한·EU 및 한·터키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에 있어 HS 4단위 기준으로 59개 세번에 대해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 원부자재가 투입되어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들 물품의 경우 원재료의 선택에 있어 동일 세번 분류물품은 원산지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다른 협정들에 비해, 보다 저렴하거나 양질의 비원산지 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재료 선택의 폭이 넓어져 생산자 및 수출자의 FTA활용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 | 한·EU FTA | 동일 호 포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활용 사례


HS번호	품명	원산지결정기준
2103.90	된장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원재료 투입내역〉

연번	원재료명	세번	원산지
1	대두	1201.00	비원산지
2	정제수	2201.90	비원산지
3	정제염	2501.00	비원산지
4	주정	2207.20	비원산지
5	겨자분말	2103.30	비원산지

혼합
⇒
숙성

수출물품세번
2103.90



이를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된장(HS 제2103.90호)³⁵⁾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동일 호가 사용될 수 없는 여타 협정의 경우에는 HS 4단위 기준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겨자분말(HS 제2103.30 호)이 반드시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하나 한·EU 및 한·터키 FTA에서는 비원산지물품이 투입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즉, 된장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적용되는 한·칠레, 한·EFTA, 한·미 FTA의 경우 원재료로 비원산지 겨자분말(HS 제2103.30호)을 사용하여 완제품인 된장(HS 제2103.90호)을 생산한 경우 겨자분말의 4단위 세번이 변화하지 않아 FTA특혜적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EU 및 한·터키 FTA에서는 동일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도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FTA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비원산지 겨자분말의 사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생산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다 저렴하거나 양질의 비원산지물품도 사용이 가능해져 생산원가 절감과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의 원재료 선택 편의 증대와 FTA활용 효과의 증진이 가능한 것이다.

35) 한·EU FTA 발효(2011.7.1)를 기준으로 발효 이전인 2010년 2,068천불이던 된장 등 장류의 수출액이 발효 첫해인 2011년 42% 늘어난 2,938천불이 수출되었으며, 2012년에는 다시 12% 증가한 3,312천불이 수출되었다.

05

FTA 교역지도

주요 소비생활 10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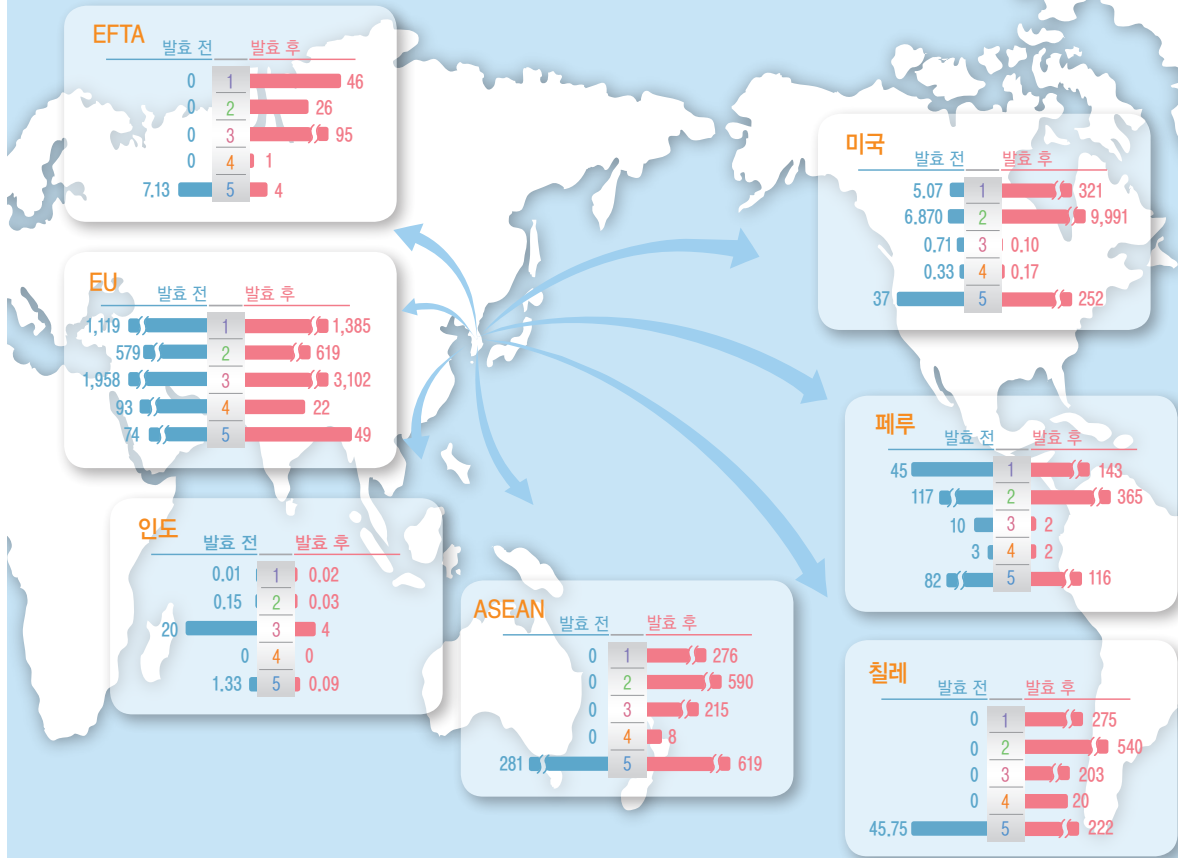
자동차, 의류, 가정용 회전기기, 기호식품, 어류, 비누 치약 및 화장품, 농산가공품, 난방 및 전열기기, 휴대용품, 사무용품

자동차 | 수출 |

■ 해당품목

1. 불꽃점화식 1,500시시 이하
2. 불꽃점화식 1,500시시 초과
3. 압축점화식 2,500시시 이하
4. 압축점화식 2,500시시 초과
5. 화물자동차

[단위: 백만불]



■ 자동차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미국	2012.3	7,059	10,833
2	EU	2011.7	3,861	5,234
3	ASEAN	2007.6	1,086	1,835
4	칠레	2004.4	146	1,262
5	페루	2011.8	258	629
6	EFTA	2006.9	272	173
7	인도	2010.1	22	5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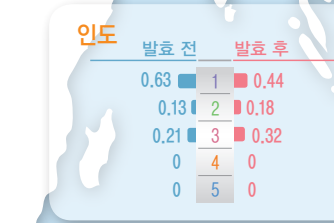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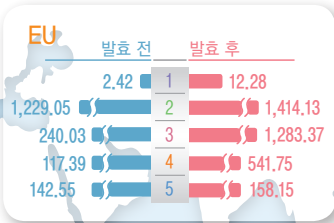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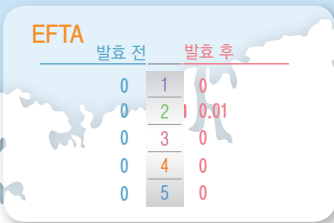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자동차 | 수입 |

■ 해당품목

1. 불꽃점화식 1,500cc이하
2. 불꽃점화식 1,500cc초과
3. 압축점화식 2,500cc이하
4. 압축점화식 2,500cc초과
5. 화물자동차

[단위: 백만불]



■ 자동차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EU	2011.7	2,056	3,788
2	미국	2012.3	309	717
3	ASEAN	2007.6	1	17
4	인도	2010.1	27	2
5	EFTA	2006.9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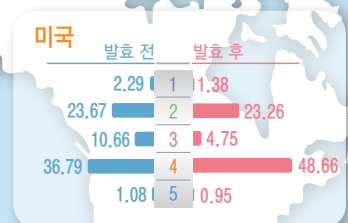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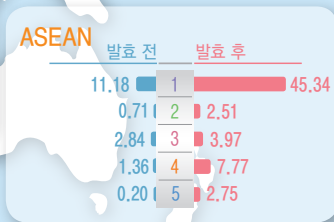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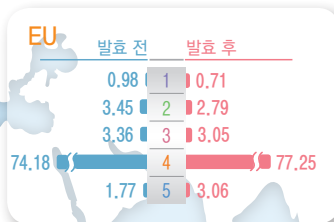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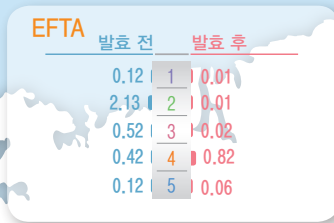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 FTA 발효 후(2012년)

의류 | 수출 |

■ 해당품목

1. 기타의류
2. 스웨터
3. 언더셔츠
4. 장갑
5. 코트 및 자켓

[단위: 백만불]



■ 의류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ASEAN	2007.6	84.3	368.0
2	미국	2012.3	277.3	239.0
3	EU	2011.7	139.0	141.0
4	EFTA	2006.9	14.3	5.0
5	인도	2010.1	1.0	1.0
6	칠레	2004.4	2.0	1.0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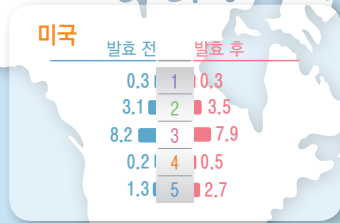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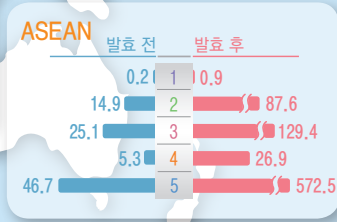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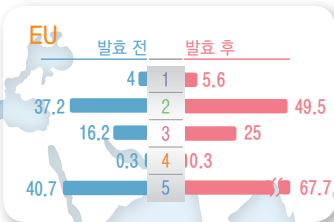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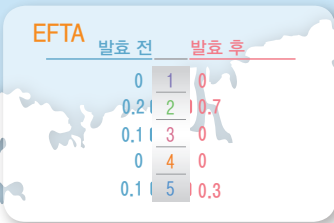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의류 | 수입 |

■ 해당품목

1. 기타의류
2. 스웨터
3. 언더셔츠
4. 장갑
5. 코트 및 자켓

[단위: 백만불]



■ 의류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ASEAN	2007.6	119.3	1,927
2	EU	2011.7	335.7	453
3	미국	2012.3	100.0	95
4	인도	2010.1	20.7	50
5	EFTA	2006.9	2.3	6
6	페루	2011.8	8.0	6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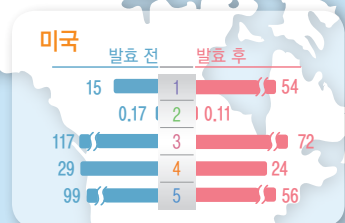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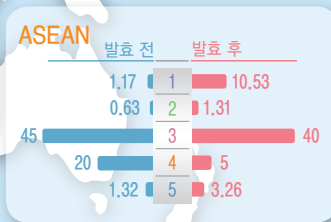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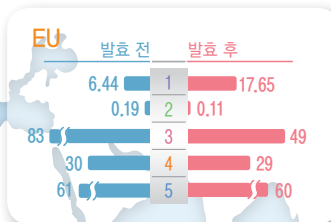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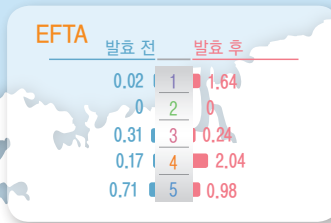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가정용 회전기기 | 수출

■ 해당품목

1. 믹서
2. 선풍기
3. 세탁기
4. 에어컨
5. 진공청소기

[단위: 백만불]



■ 가정용 회전기기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미국	2012.3	298.0	251
2	EU	2011.7	189.0	157
3	ASEAN	2007.6	68.3	63
4	인도	2010.1	6.7	16
5	칠레	2004.4	21.0	8
6	EFTA	2006.9	1.3	5
7	페루	2011.8	3.7	5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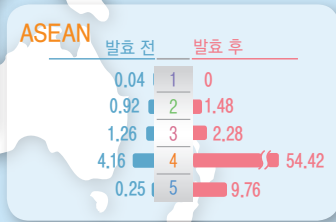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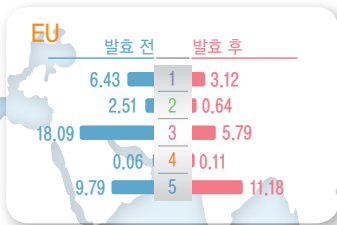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가정용 회전기기 | 수입

■ 해당품목

1. 믹서
2. 선풍기
3. 세탁기
4. 에어컨
5. 진공청소기

[단위: 백만불]



■ 가정용 회전기기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ASEAN	2007.6	7.0	69.0
2	EU	2011.7	41.7	28.0
3	미국	2012.3	7.3	10.0
4	인도	2010.1	0.3	0.0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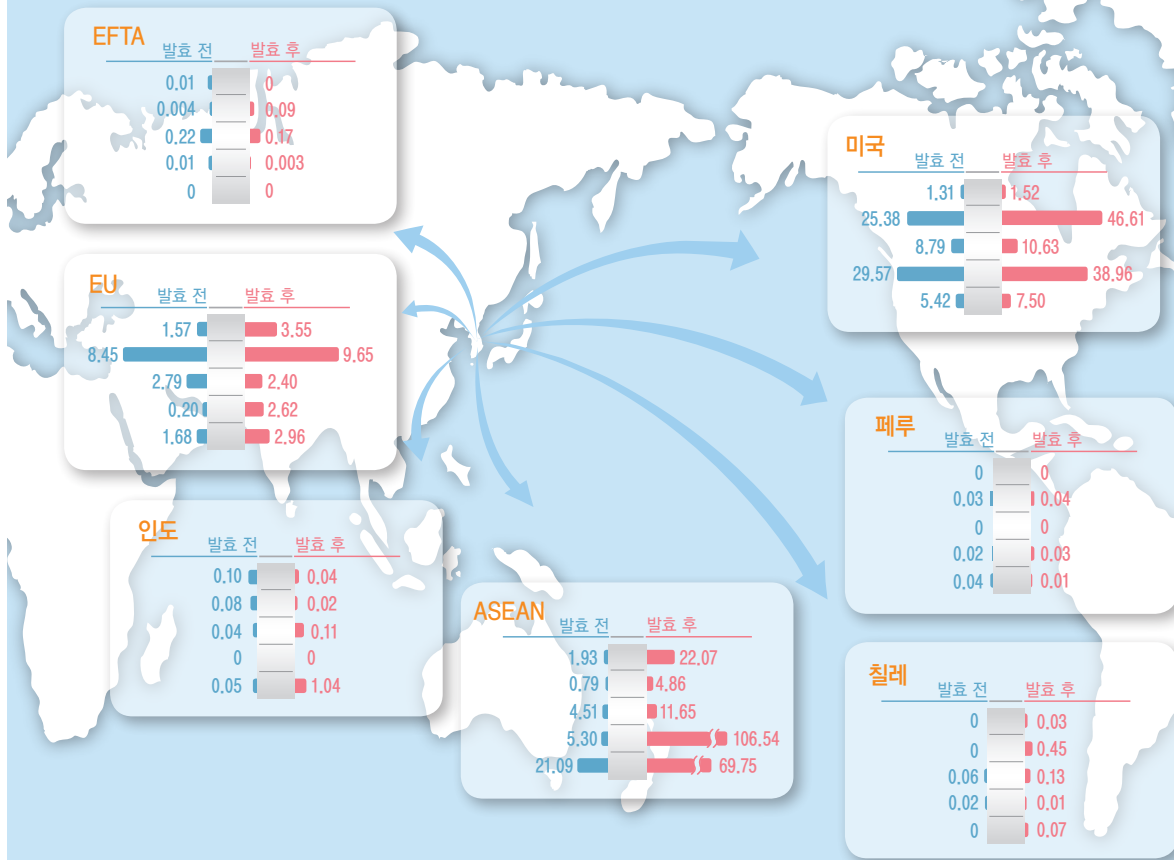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기호식품 | 수출 |

■ 해당품목

1. 기타당류
2. 기타음료
3. 인삼류
4. 제조담배
5. 커피조제품

[단위: 백만불]



■ 기호식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ASEAN	2007.6	61.3	273
2	미국	2012.3	97.7	134
3	EU	20011.7	21	29
4	EFTA	2006.9	2.4	3.1
5	인도	2010.1	2.7	2.0
6	칠레	2004.4	0.1	1.0
7	페루	2011.8	0.1	0.1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 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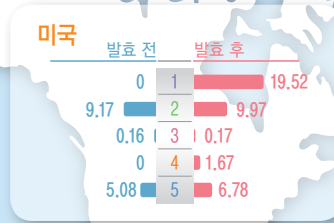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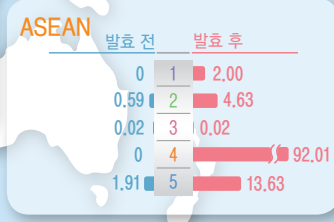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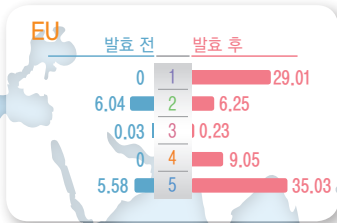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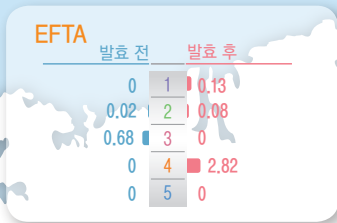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기호식품 | 수입 |

■ 해당품목

1. 기타당류
2. 기타음료
3. 인삼류
4. 제조담배
5. 커피조제품

[단위: 백만불]



■ 기호식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ASEAN	2007.6	156	773
2	EU	2011.7	540	682
3	미국	2012.3	223	340
4	칠레	2004.4	2	57
5	인도	2010.1	35	44
6	페루	2011.8	25	39
7	EFTA	2006.9	1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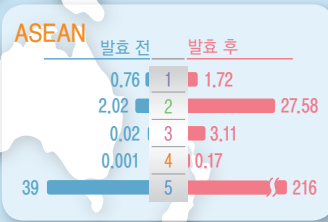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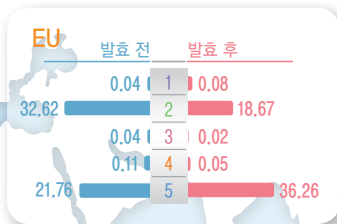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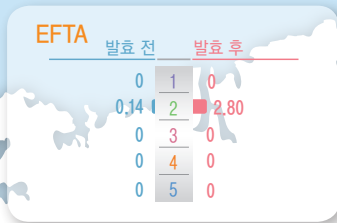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 FTA 발효 후(2012년)

어류 | 수출 |

■ 해당품목

1. 갈치
2. 기타어류
3. 명태
4. 조기
5. 참치

[단위: 백만불]



■ 어류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ASEAN	2007.6	41.7	255.0
2	EU	2011.7	56.3	56.0
3	미국	2012.3	32.7	44.0
4	EFTA	2006.9	0.3	3.0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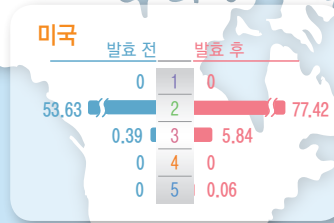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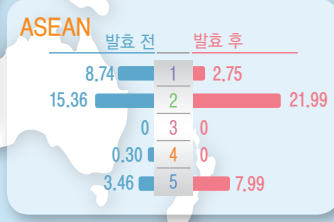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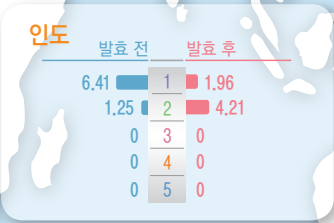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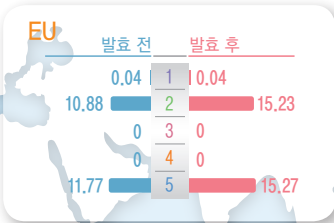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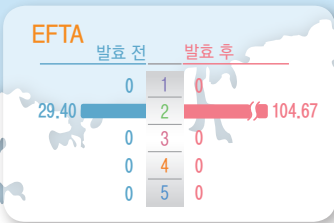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어류 | 수입 |

■ 해당품목

1. 갈치
2. 기타어류
3. 명태
4. 조기
5. 참치

[단위: 백만불]



■ 어류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EFTA	2006.9	29.3	105.0
2	미국	2012.3	64.7	99.0
3	칠레	2004.4	11.0	42.0
4	ASEAN	2007.6	27.7	39.0
5	EU	2011.7	23.0	31.0
6	인도	2010.1	7.7	6.0
7	페루	2011.8	0.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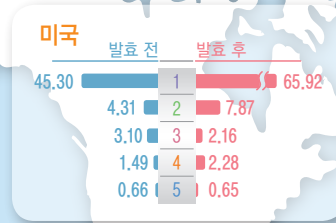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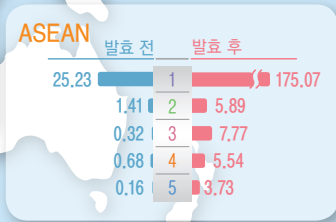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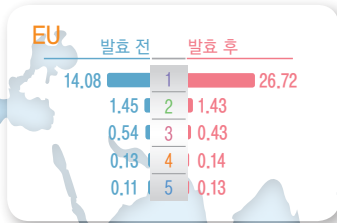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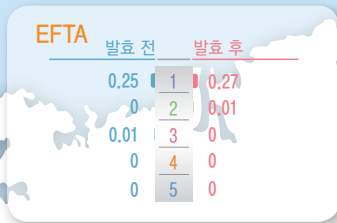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 FTA 발효 후(2012년)

비누치약 및 화장품 | 수출 |

■ 해당품목

1. 기타화장품
2. 눈화장품
3. 비누
4. 샴푸
5. 치약

[단위: 백만불]



■ 비누치약 및 화장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ASEAN	2007.6	34.0	210
2	미국	2012.3	56.7	81
3	EU	2011.7	16.7	30
4	인도	2010.1	1.3	4
5	EFTA	2006.9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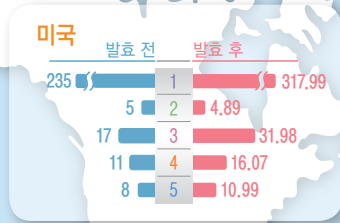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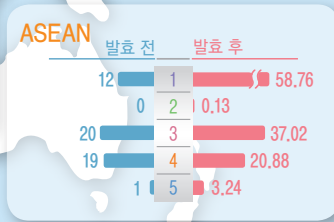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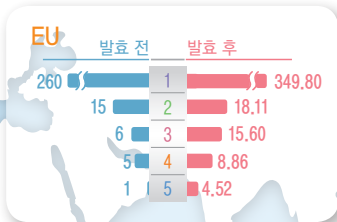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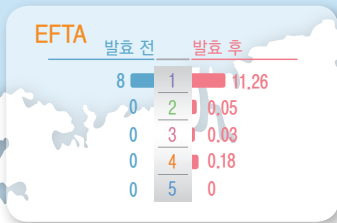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 FTA 발효 후(2012년)

비누치약 및 화장품 | 수입 |

■ 해당품목

1. 기타화장품
2. 눈화장품
3. 비누
4. 샴푸
5. 치약

[단위: 백만불]



■ 비누치약 및 화장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EU	2011.7	377	514
2	미국	2012.3	296	409
3	ASEAN	2007.6	65	127
4	EFTA	2006.9	8	12
5	인도	2010.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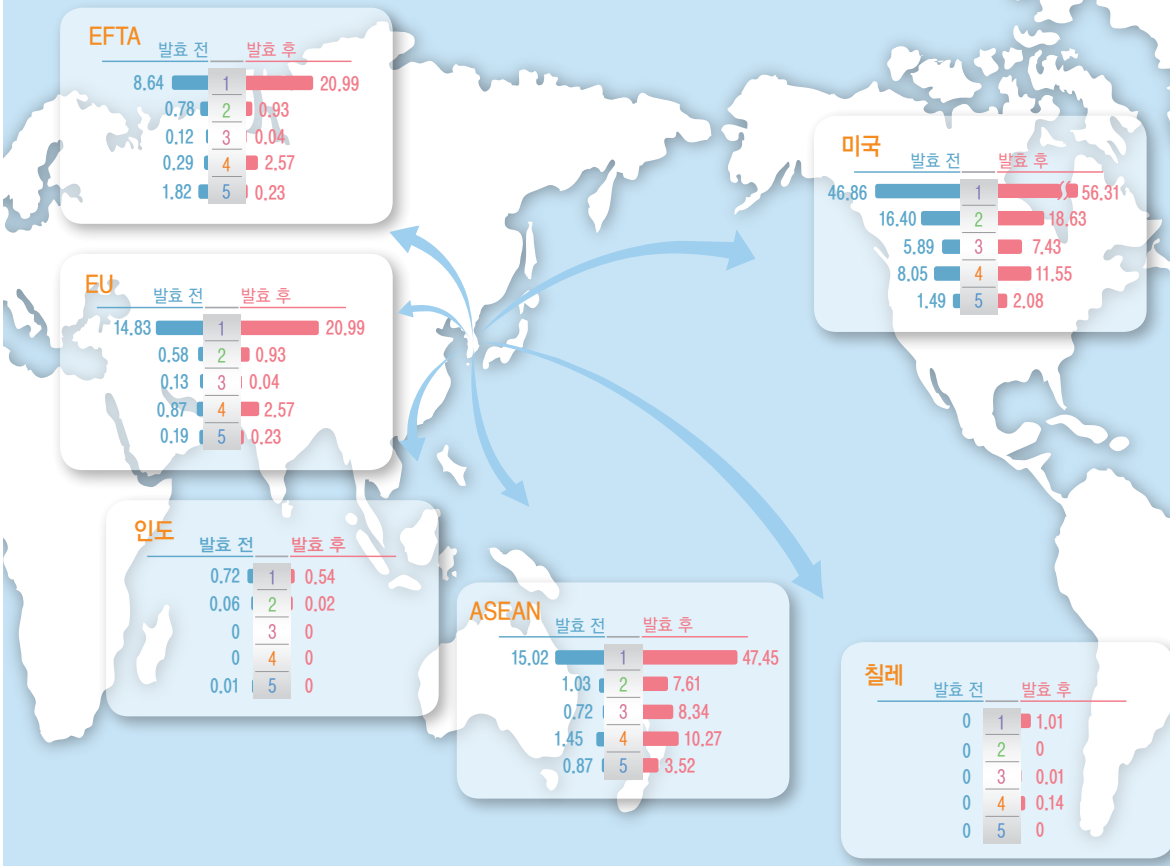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 FTA 발효 후(2012년)

농산가공품 | 수출 |

■ 해당품목

1. 면류
2. 비스킷
3. 병과류
4. 빵
5. 사탕

[단위: 백만불]



■ 농산가공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미국	2012.3	107.7	131
2	ASEAN	2007.6	23.7	93
3	EU	2011.7	20.0	31
4	EFTA	2006.9	2.0	3
5	인도	2010.1	2.3	1
6	칠레	2004.4	0.0	1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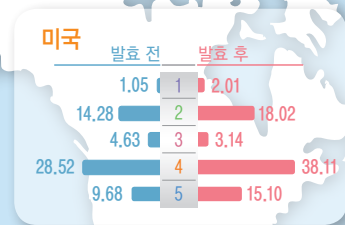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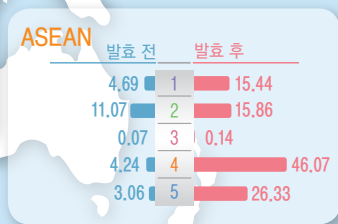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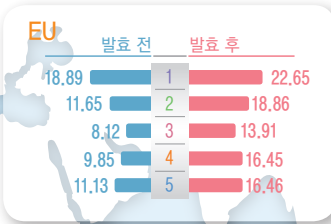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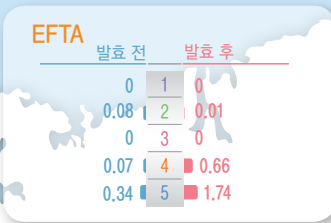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농산가공품 | 수입 |

■ 해당품목

1. 면류
2. 비스킷
3. 빙과류
4. 빵
5. 사탕

[단위: 백만불]



■ 농산가공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ASEAN	2007.6	67.7	216
2	미국	2012.3	121.0	161
3	EU	2011.7	94.7	138
4	EFTA	2006.9	2.0	7
5	인도	2010.1	3.3	4
6	칠레	2004.4	0.0	3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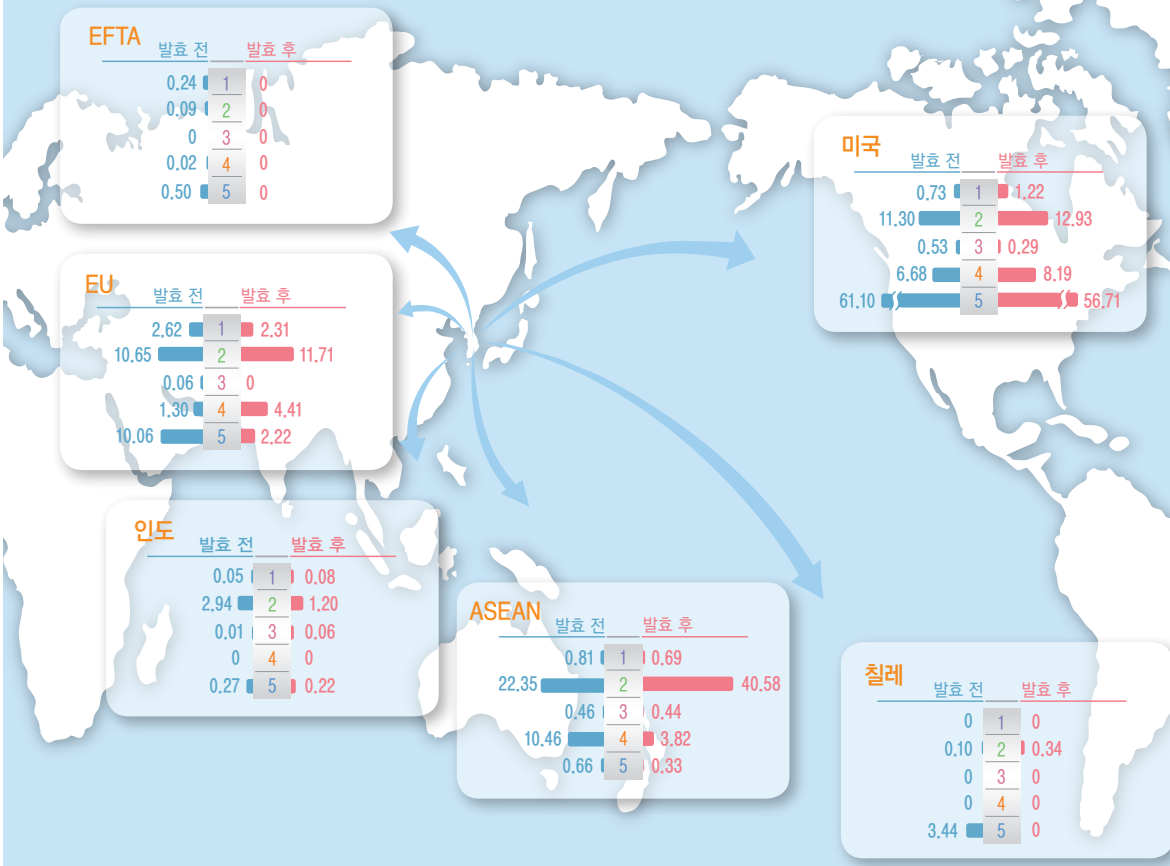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난방 및 전열기기 | 수출 |

■ 해당품목

1. 난방기기
2. 난방 및 전열기기 부품
3. 전기다리미
4. 전기밥솥
5. 전자레인지

[단위: 백만불]



■ 난방 및 전열기기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미국	2012.3	103.7	92.0
2	ASEAN	2007.6	41.0	50.0
3	EU	2011.7	35.7	25.0
4	칠레	2004.4	3.7	3.0
5	인도	2010.1	3.0	2.0
6	EFTA	2006.9	1.0	0.0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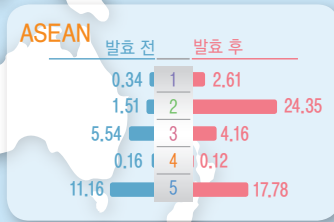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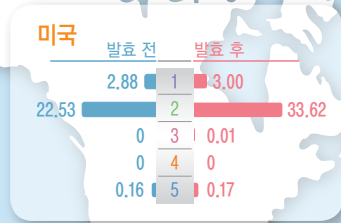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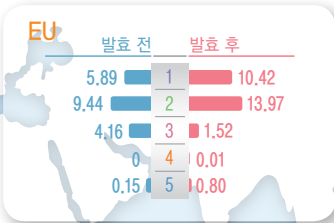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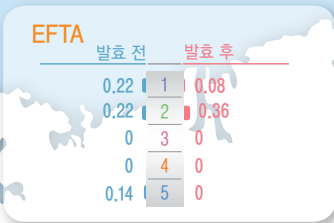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난방 및 전열기기 | 수입 |

■ 해당품목

1. 난방기기
2. 난방 및 전열기기 부품
3. 전기다리미
4. 전기밥솥
5. 전자레인지

[단위: 백만불]



■ 난방 및 전열기기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EU	2011.7	66.3	84
2	ASEAN	2007.6	20	56
3	미국	2012.3	28	39
4	EFTA	2006.9	1	12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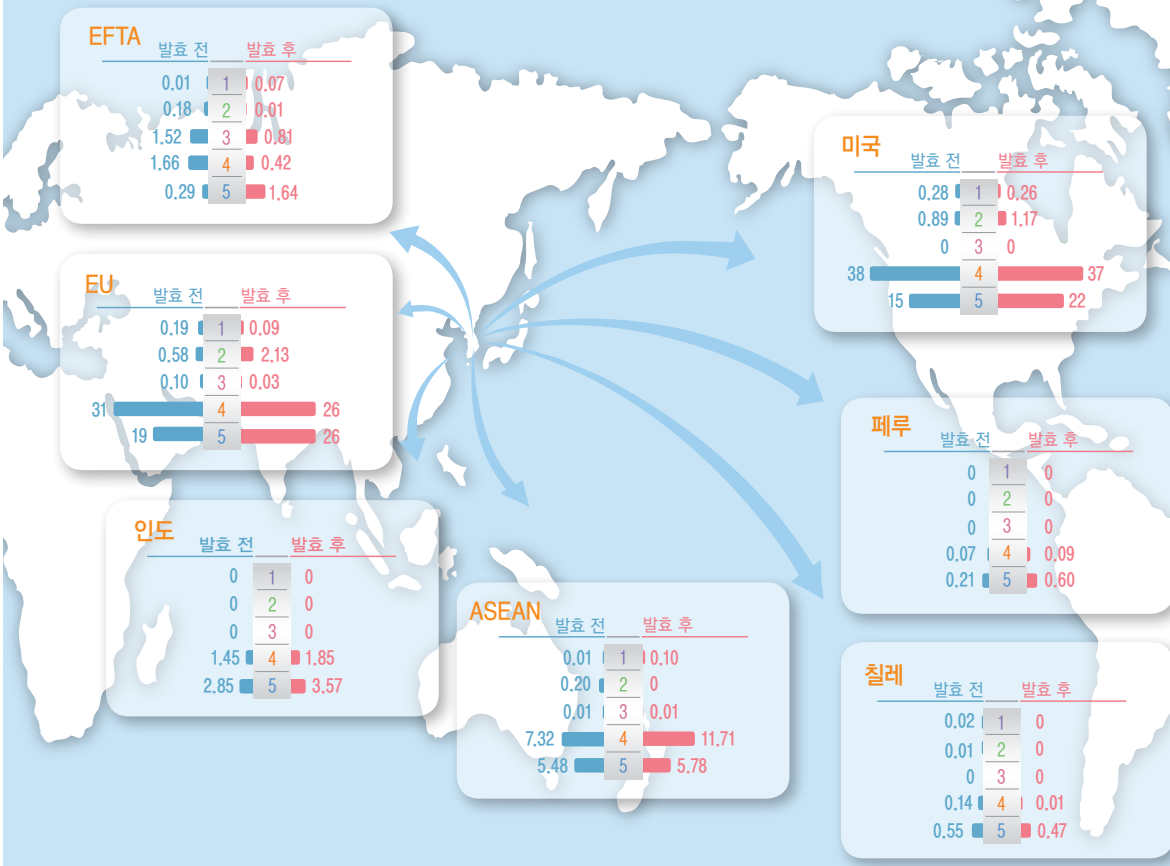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휴대용품 | 수출 |

■ 해당품목

1. 기타휴대용품
2. 라이터
3. 시계줄
4. 장신구
5. 화장품용품

[단위: 백만불]



■ 휴대용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미국	2012.3	54.3	60.0
2	EU	2011.7	50.3	54.0
3	ASEAN	2007.6	13.0	18.0
4	인도	2010.1	4.3	5.0
5	EFTA	2006.9	3.7	3.0
6	페루	2011.8	0.3	1.0
7	칠레	2004.4	0.7	0.5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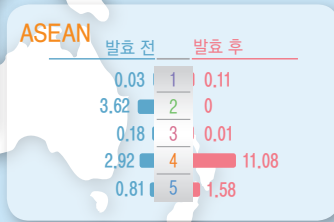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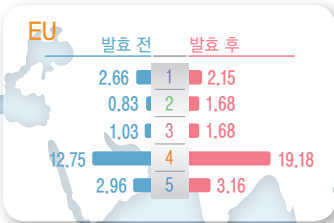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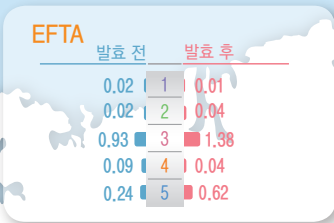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휴대용품 | 수입 |

■ 해당품목

1. 기타휴대용품
2. 라이터
3. 시계줄
4. 장신구
5. 화장품품

[단위: 백만불]



■ 휴대용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EU	2011.7	20.3	28
2	ASEAN	2007.6	7.7	13
3	미국	2012.3	5.3	8
4	EFTA	2006.9	1.3	2
5	인도	2010.1	0.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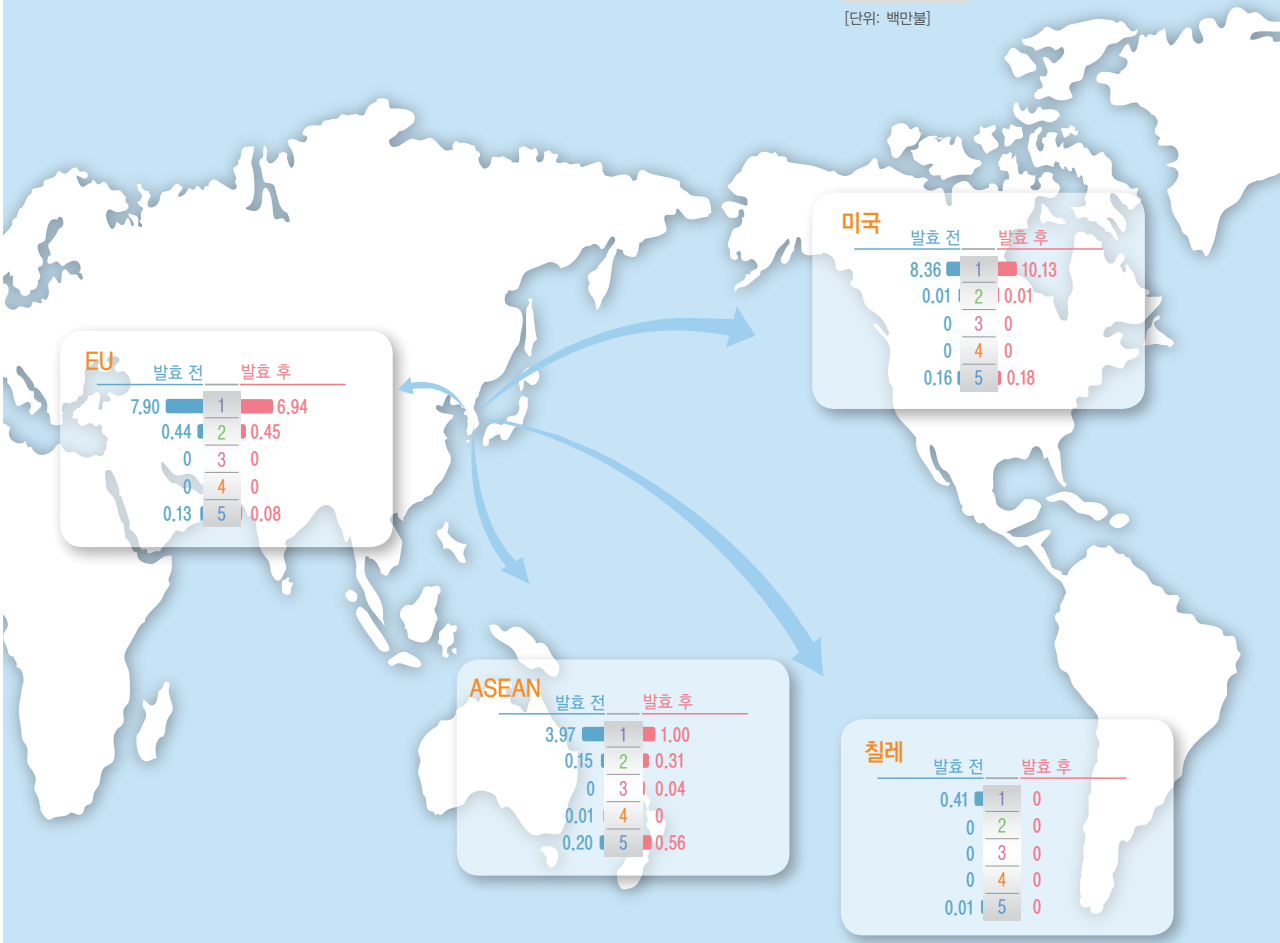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 FTA 발효 후(2012년)

사무용품 | 수출 |

■ 해당품목

1. 노트북
2. 사무용칼
3. 압정/사무용핀
4. 연필/질삭기
5. 칠판

[단위: 백만불]



■ 사무용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미국	2012.3	8.7	10
2	EU	2011.7	8.3	7
3	ASEAN	2007.6	4.0	2
4	칠레	2004.4	0.3	0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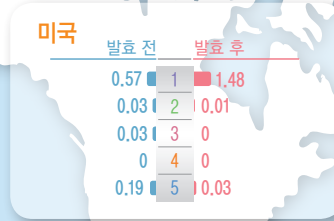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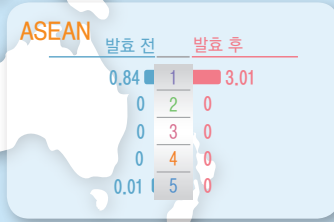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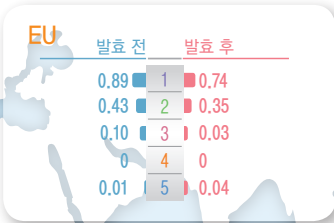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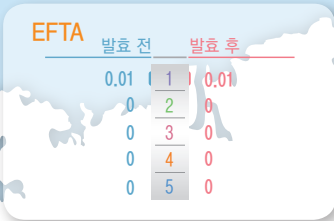
※ FTA 발효 후(2012년)

사무용품 | 수입 |

■ 해당품목

1. 노트북
2. 사무용칼
3. 압정/사무용핀
4. 연필절삭기
5. 칠판

[단위: 백만불]



■ 사무용품 FTA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발효일자	FTA 발효전	FTA 발효후
1	ASEAN	2007.6	1.0	3
2	미국	2012.3	1.0	2
3	EU	2011.7	1.3	1
4	EFTA	2006.9	0.014	0.014

※ 주: FTA 발효전 (개별 FTA국가의 발효연도 기준 3년 평균)

※ FTA 발효 후(2012년)

부록

FTA 국가의 수출입 활용률
FTA 국가의 수출입 실적
對한 EFTA 수출입실적 및 對한 교역품목
기계류 협정별 특혜수출입 동향 (2012년)



FTA 통계 1

|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

단위 : %

구 분(발효일)	수 출			수 입		
	2011년	2012년	2013년 (1월~9월)	2011년	2012년	2013년 (1월~9월)
칠레(2004. 4)	-	75.2	79.3	95.8	97.9	98.2
EFTA(2006. 9)	-	79.8	79.3	55.7	61.9	41.6
ASEAN(2007. 6)	33.1	37.7	38.7	73.8	73.8	73.9
인도(2010. 1)	35.8	36.2	42.6	53.6	52.7	63.8
EU(2011. 7)	65.7	81.4	81.2	47.1	66.8	67.6
페루(2011. 8)	61.3	78.0	91.5	52.6	92.0	71.4
미국(2012. 3)	-	68.9	77.5	-	61.0	67.3

| 산업별 FTA 수출 활용률 |

단위 : %

구 분	농림 수산물	광산물	화학 공업 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 용품	철강 금속 제품	기계류	전자 전기 제품	잡제품
EFTA	81.1	90.1	84.9	68.9	73.6	59.8	67.2	86.6	51.5	60.4
EU	52.7	57.1	75.5	90.7	86.6	85.3	70.8	89.6	76.0	77.4
미국	53.0	85.6	71.6	83.2	71.9	67.4	78.5	81.2	61.4	65.0
ASEAN	22.4	53.3	57.9	28.2	13.3	9.6	75.0	30.1	8.2	10.7
인도	10.3	1.6	65.1	51.3	12.6	3.8	87.7	15.1	19.3	12.9
칠레	29.9	97.6	77.0	84.8	61.0	18.1	62.9	82.6	54.9	46.3
페루	11.7	100.0	39.4	52.6	56.4	67.2	51.2	97.6	97.0	4.8
전체	38.7	65.3	67.0	76.3	50.5	56.7	78.2	73.8	50.2	46.9

주 : 2013년 1월~9월

| FTA 국가의 수출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2012년 3분기	2013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EU	수출	55,727	49,371	-11.4	12,396	11,892	-4.1
	수입	47,424	50,374	6.2	12,925	14,113	9.2
	교역액	103,151	99,745	-3.3	-528	-2,221	-320.6
페루	수출	1,368	1,950	42.5	367	365	-0.5
	수입	1,950	1,473	-24.5	438	470	7.3
	교역액	3,318	3,423	3.2	-71	-105	-47.9
미국	수출	58,524	58,524	0.0	13,728	14,866	8.3
	수입	43,337	43,337	0.0	10,113	9,993	-1.2
	교역액	101,861	101,861	0.0	3,615	4,873	34.8
칠레	수출	2,381	2,469	3.7	572	507	-11.4
	수입	4,858	4,676	-3.8	1,065	1,112	4.4
	교역액	7,239	7,145	-1.3	-494	-605	-22.5
ASEAN	수출	71,801	79,145	10.2	18,829	19,670	4.5
	수입	53,121	51,977	-2.2	12,389	12,799	3.3
	교역액	124,922	131,122	5.0	6,439	6,871	6.7
인도	수출	12,654	11,922	-5.8	3,121	2,859	-8.4
	수입	7,894	6,921	-12.3	1,576	1,496	-5.1
	교역액	20,548	18,843	-8.3	1,545	1,363	-11.8
EFTA	수출	1,818	1,495	-17.8	408	1,046	156.4
	수입	5,177	7,713	49.0	2,290	1,422	-37.9
	교역액	6,995	9,208	31.6	-1,882	-376	80.0
FTA체결국	수출	201,957	204,399	1.2	49,421	51,205	3.6
	수입	164,993	166,642	1.0	40,796	41,405	1.5
	교역액	366,950	371,041	1.1	8,624	9,800	13.6
비 FTA국	수출	353,257	343,471	-2.8	83,704	85,633	2.3
	수입	359,420	352,942	-1.8	84,856	84,420	-0.5
	교역액	712,679	696,415	-2.3	-1,151	1,213	205.4
총계	수출	555,214	547,870	-1.3	133,125	136,838	2.8
	수입	524,413	519,584	-0.9	125,652	125,825	0.1
	교역액	1,079,629	1,067,456	-1.1	7,473	11,013	47.4

| FTA 체결국별 특혜수출입 분기별 실적 (2013. 1분기 ~ 2013. 3분기)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출)	2013. 1분기	2013. 2분기	2013. 3분기	2012. 1분기~3분기	2013. 1분기~3분기	증감
1 EU	7,397	5,802	3,632	16,127	16,831	4.4
2 페루	158	141	185	414	484	16.9
3 미국	4,269	4,883	5,018	8,881	14,170	59.6
4 칠레	458	526	408	1,281	1,392	8.7
5 ASEAN	1,611	1,728	1,772	4,558	5,111	12.1
6 인도	906	742	770	2,203	2,418	9.8
7 EFTA	40	35	37	142	112	-21.1
총 계	14,839	13,857	11,822	33,606	40,518	20.6

주 : ASEAN의 경우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있지 않음

한·미 FTA의 경우 협정 발효일이 2012년 3월 15일이므로 2013년 1분기~3분기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FTA 무역리포트 2차보고서 2013년 1분기 FTA 특혜수출 ASEAN 71백만달러→1,611백만달러, 인도 31백만달러→906백만달러로 정정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입)	2013. 1분기	2013. 2분기	2013. 3분기	2012. 1분기~3분기	2013. 1분기~3분기	증감
1 EU	6,877	6,360	6,654	18,761	19,891	6.0
2 페루	253	144	115	119	512	330.3
3 미국	3,853	4,036	3,403	7,626	11,292	48.1
4 칠레	517	483	452	1,628	1,452	-10.8
5 ASEAN	5,767	5,352	4,850	17,172	15,969	-7.0
6 인도	373	395	341	780	1,109	42.2
7 EFTA	675	472	483	3,384	1,630	-51.8
총 계	18,315	17,242	16,298	49,470	51,855	4.8

주 : 한·미 FTA의 경우 협정 발효일이 2012년 3월 15일이므로 2013년 1분기~3분기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FTA 무역리포트 2차보고서 2013년 1분기 FTA 특혜수입 미국 7,245백만달러→3,853백만달러, ASEAN 3,761백만달러→5,767백만달러,
 페루 173백만달러→253백만달러로 정정

| FTA국가로의 수출입 MTI 3단위 5대품목 (2013. 1분기 ~ 2013. 3분기)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출)	2013. 1분기	2013. 2분기	2013. 3분기	2012. 1분기~3분기	2013. 1분기~3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 석유제품	5,739	6,420	6,590	10,247	18,749	83
2 자동차	5,434	5,880	4,475	18,593	15,789	-15.1
3 반도체	3,693	4,088	4,309	13,860	12,090	-12.8
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490	4,608	3,174	14,434	11,272	-21.9
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586	1,221	1,090	3,839	3,897	1.5
총 계	19,942	22,217	19,638	60,973	61,797	1.4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입)	2013. 1분기	2013. 2분기	2013. 3분기	2012. 1분기~3분기	2013. 1분기~3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 반도체	2,916	3,286	3,269	8,516	9,471	11.2
2 석유제품	2,893	2,686	2,608	7,247	8,187	13.0
3 천연가스	2,190	2,014	1,849	6,493	6,053	-6.8
4 원유	2,984	1,590	1,191	8,173	5,765	-29.5
5 석탄	987	845	885	3,559	2,717	-23.7
총 계	11,970	10,421	9,802	33,988	32,193	-5.3

FTA 통계 2

| 對한 EFTA 연도별 수출입 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1,123	2,521	1,956	3,522	1,818	1,495
수입	3,554	4,138	4,548	5,699	5,177	7,713
무역수지	-2,431	-1,617	-2,591	-2,176	-3,360	-6,218

| EFTA 對한 10대 교역품목 (2012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 목	수 출 액		전년대비 증감율	품 목	수 입 액		전년대비 증감율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원유	246	2,280	826.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166	971	-16.8
2	원동기 및 펌프	390	403	3.5	자동차	232	173	-25.5
3	농약 및 의약품	418	400	-4.2	무선통신기기	48	30	-36.4
4	시계	341	383	12.2	고무제품	25	27	6.8
5	금은 및 백금	168	364	116.6	시계	8	13	70
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36	321	36	기타석유화학제품	13	13	-3
7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175	310	76.8	전자응용기기	12	13	4.9
8	계측제어분석기	184	309	68.4	플라스틱 제품	11	12	3.8
9	기타기계류	361	274	-24.2	공구	12	10	-20
10	건설광산기계	126	252	99.6	금은 및 백금	17	9	-45.2

주 : MTI 3단위 기준

FTA 통계 3

| 2012년 기계류 협정별 특혜수출 동향 |

단위 : 천달러, %

협정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미국	25,843,367	9,764,944	37.8
EU	21,794,464	13,054,518	59.9
ASEAN	13,823,150	4,231,488	30.6
인도	3,836,889	2,806,018	73.1
칠레	1,476,962	1,457,788	98.7
EFTA	1,201,786	218,042	18.1
페루	780,777	516,071	66.1
총 계	68,757,395	32,048,869	46.6

주 : MTI 1단위 기준

비중 : 총 수출금액 중 FTA대상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2012년 협정별 주요 특혜수출품목 (MTI 4단위³⁶⁾) |

칠레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승용차	1,040,356	1,040,331	100.0
2 화물자동차	222,352	222,352	100.0
3 자동차부품	61,679	61,679	100.0
4 건설중장비	58,520	58,520	100.0
5 섬유기계	19,992	1,123	5.6
6 공기조절기	9,823	9,823	100.0
7 기타산업기계	7,146	7,146	100.0
8 펌프	6,523	6,523	100.0
9 가열난방기	5,196	5,196	100.0
10 원동기	4,921	4,921	100.0
총 계	1,436,507	1,417,613	98.7

36) 산업통계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품의 상위범주인 기계류의 FTA국 통계를 살펴보겠다. 또한, MTI 6단위의 경우 품명이 불꽃점화식 1,500시시 초과 등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품명이 나타나므로 MTI 상위범주인 MTI 4단위를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ASEAN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선박	5,552,661	95,768	1.7
2	승용차	1,088,333	269,287	24.7
3	자동차부품	900,900	530,935	58.9
4	건설중장비	750,016	536,064	71.5
5	화물자동차	614,974	145,414	23.6
6	기타기계류	480,973	268,769	55.9
7	펌프	314,187	254,232	80.9
8	플라스틱금형	258,787	225,825	87.3
9	기타기계류부품	254,999	119,517	46.9
10	원동기	234,539	81,538	34.8
	총 계	10,450,369	2,527,349	24.2

EFTA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선박	968,263	86,590	8.9
2	승용차	168,760	107,774	63.9
3	건설중장비	8,833	671	7.6
4	시계부품	5,388	5,388	100.0
5	다이아몬드공구	4,832	1,868	38.7
6	금속절삭가공기계	4,344	1,238	28.5
7	의료용기기	4,082	0	0
8	화물자동차	4,047	1,641	40.6
9	고속도강 및 초경공구	4,025	3,750	93.2
10	펌프	3,339	1,073	32.1
	총 계	1,175,913	209,993	17.9

인도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자동차부품	1,591,413	1,341,276	84.3
2	선박	355,239	355,239	100.0
3	건설중장비	266,672	186,134	69.8
4	가열난방기	155,701	147,280	94.6
5	기타기계류	146,227	123,838	84.7
6	원동기	135,020	0	0
7	금속절삭가공기계	110,057	79,265	72.0
8	펌프	99,451	10,469	10.5
9	금속성형가공기계	89,725	52,333	58.3
10	플라스틱금형	78,897	78,897	100
총 계		3,028,402	2,374,731	78.4

페루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승용차	511,692	511,692	100.0
2	화물자동차	115,609	-	0
3	건설중장비	65,911	-	0
4	자동차부품	31,085	92	0.3
5	섬유기계	24,757	-	0
6	원동기	3,515	-	0
7	공기조절기	2,105	-	0
8	운반하역기계	1,903	-	0
9	기타기계류	1,782	48	2.7
10	기타산업기계	1,776	1,141	64.2
총 계		760,134	512,973	67.5

EU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선박	7,917,991	86,431	1.1
2	승용차	5,130,281	5,130,281	100.0
3	자동차부품	3,677,758	3,677,758	100.0
4	건설중장비	831,516	111,684	13.4
5	원동기	533,135	533,135	100.0
6	광학기기부품	372,297	372,296	100.0
7	금속절삭가공기계	334,459	334,459	100.0
8	펌프	313,824	313,824	100.0
9	철도차량	181,869	181,869	100.0
10	프레스금형	171,030	171,030	100.0
	총 계	19,464,160	10,912,766	56.1

미국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승용차	10,291,294	139	0.0
2	자동차부품	5,607,165	5,601,569	99.9
3	선박	1,458,503	1,656	0.1
4	건설중장비	1,148,095	0	0.0
5	섬유기계	1,042,646	1,031,144	98.9
6	원동기	836,348	696,558	83.3
7	펌프	516,563	104,328	20.2
8	항공기부품	496,674	336	0.1
9	해양구조물	462,484	0	0.0
10	금속절삭가공기계	424,606	424,606	100.0
	총 계	22,284,376	7,860,336	35.3

| 2012년 기계류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

단위 : 천달러, %

협정	총 수입금액	FTA 대상 수입금액	비중
EU	17,914,153	14,452,709	80.7
미국	11,520,835	5,265,771	45.7
EFTA	2,575,372	2,137,687	83
ASEAN	2,091,260	895,351	42.8
인도	163,780	143,578	87.7
칠레	155	113	72.9
페루	15	14	97.7
총 합계	34,265,570	22,895,223	66.8

칠레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기타농기계	29	29	100.0
2 건설중장비	25	-	0
3 시계	20	20	100.0
4 금속공작기계부품	14	14	100.0
5 항공기부품	14	-	0
6 선박	13	13	100.0
7 기타산업기계	12	12	100.0
8 자동차부품	11	10	95.8
9 원동기	4	4	100.0
10 밸브	2	2	100.0
총 계	144	104	72.6

ASEAN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반도체제조용장비	986,231	27,561	2.8
2	펌프	150,601	148,660	98.7
3	자동차부품	109,752	108,271	98.7
4	광학기계부품	66,586	46,516	69.9
5	기타기계류	63,356	62,768	99.1
6	금속절삭가공기계	61,950	61,950	100.0
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53,737	3,191	5.9
8	원동기	53,160	49,551	93.2
9	의료용기기	47,476	32,845	69.2
10	베어링	36,832	11,016	29.9
	총 계	1,629,679	552,329	33.9

EFTA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시계	373,929	371,072	99.2
2	펌프	309,813	309,770	100.0
3	선박용 부품	284,472	284,201	99.9
4	건설중장비	251,711	77,153	30.7
5	기타기계류	247,335	244,811	99.0
6	운반하역기계	192,100	24,395	12.7
7	금속절삭가공기계	102,512	102,075	99.6
8	원동기	93,767	93,691	99.9
9	화학기계	66,214	64,875	98.0
10	밸브	66,130	65,681	99.3
	총 계	1,987,983	1,637,723	82.4

인도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자동차부품	48,206	48,198	100.0
2	밸브	18,266	12,902	70.6
3	원동기	15,369	15,369	100.0
4	펌프	13,082	13,081	100.0
5	건설중장비	10,155	222	2.2
6	기타산업기계	8,786	8,729	99.3
7	화학기계	5,579	5,578	100.0
8	베어링	5,354	5,354	100.0
9	기타기계요소	5,057	5,047	99.8
10	전동축및기어	4,665	4,664	100.0
총 계		134,520	119,143	88.6

페루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금속공작기계부품	4.5	4.5	100.0
2	기타기계류	4.0	4.0	100.0
3	기타자동차	1.6	1.6	100.0
4	자동차부품	1.6	1.6	100.0
5	시계	0.7	0.7	100.0
6	기타산업기계	0.5	0.5	100.0
7	섬유및피혁가공기계부품	0.3	0.3	100.0
8	전동축및기어	0.3	0.3	100.0
9	화학기계	0.3	0.3	100.0
10	광학기기	0.2	0.2	100.0
총 계		14.0	14.0	100.0

EU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승용차	3,250,560	3,250,530	100.0
2	자동차부품	1,532,557	1,523,635	99.4
3	반도체제조용장비	1,415,474	70,349	5.0
4	원동기	1,136,403	1,128,353	99.3
5	펌프	1,046,397	1,024,702	97.9
6	밸브	663,815	650,878	98.1
7	기타기계류	583,838	519,255	88.9
8	전동축및기어	545,687	543,430	99.6
9	선박용 부품	503,863	491,689	97.6
10	운반하역기계	492,818	58,225	11.8
	총 계	11,171,409	9,261,046	82.9

미국

단위 : 천달러, %

	품목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항공기및부품	3,142,040	369,278	11.8
2	원동기및펌프	1,199,022	1,114,992	93.0
3	기계요소	859,440	668,380	77.8
4	자동차	715,542	708,114	99.0
5	광학기기	422,751	313,164	74.1
6	기타기계류	388,942	361,685	93.0
7	의료용기기	366,599	146,642	40.0
8	자동차부품	357,522	356,572	99.7
9	기타산업기계	224,763	211,189	94.0
10	섬유및화학기계	161,858	145,168	89.7
	총 계	7,838,478	4,395,186	56.1

용기있는 복지부정 신고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10
- ✔ 팩 스 02-2110-0678
-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 방 문 · 우 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014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999 ← 1 **대한대로**
Daehan-daero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생활하세요!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일기 쉽게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 단독주택

지번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임원리 19**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새마을길 100**

☞ 공동주택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00아파트 00동 0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00동 00호(서초동, 00아파트)

개방

공유

다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타운

협력

소통

창조 아이디어 제안

- 사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하세요, 전문가 멘토링으로 지원합니다.
- 지식재산권, 시제품 제작,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발전되도록 도와드립니다.



공유 아이디어 공간



- 생활 속 지혜, 제품 아이디어, 창업 경험, 사회 문제 등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 각 분야의 멘토와 이용자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갑니다.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 사례



- 기업, 개인, 연구소 등의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교육·문화, 안전·의료·복지, 환경·에너지 등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전시합니다.



‘창조경제타운’이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이들을 멘토링으로 지원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더하고 나누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입니다.

www.creativekorea.or.kr

2013년 9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고객님의 예금 등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면시행 이후 개인고객이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①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이체하는 경우
- ※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 유의사항

1. 고객 정보(휴대폰, 집 전화, 사무실 전화 등)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2. 보안카드번호,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대출사기,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행일 : 2013년 11월

발행처 :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 481-3282 / FAX. 042) 481-7753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 6000-701~3 / FAX. 031) 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인쇄 : 키크스코리아

발간등록번호 : 11-1220000-000336-14

2013 November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3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포괄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범사업 대상 기업 모집 안내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포괄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상기업에서는 다음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30일
서울세관장

■ 사업개요

- (사업명)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포괄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13.11.1 ~ 2014.10.30
- (사업내용) 중소제조기업이 발급하는 포괄원산지확인서가 해당협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세관장이 확인 후 세관장 확인번호 부여
- (대상기업) 서울본부세관 권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업무량에 따라 소기업 우선 지원)
- (확인대상) 완전생산기준·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 (신청단위) 발효 중인 모든 협정 HS6단위별* 신청
 - * 모델·재료·생산공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신청
- (확인효력)
 - (C/O 발급·인증) 입증서류 제출 생략 및 세관장(증명서발급기관장) 확인 생략
 - (검증) 입증서류 제출 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 가능
- (심사결과) 포괄원산지확인서 확인번호 발급 및 FTA포털 게시

■ 신청절차

- 확인 신청서, 포괄원산지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서울세관장에 제출